

漁村指導事業의 評價*

崔 正 銳**

An Evaluation on the Operating of Fisheries Extension Services

Jeong-Yoon Choi

目 次

| | |
|---------------------|----------------------|
| I. 序論 | 2. 漁村指導方法 |
| 1. 研究目的 | V. 漁村指導事業의 與件分析 |
| 2. 研究方法 | 1. 普及技術의 内容 |
| 3. 研究範圍 | 2. 指導活動과 關聯機關과의 接觸頻度 |
| II. 漁村指導事業의 現況分析 | 3. 漁村指導 與件分析 |
| 1. 漁村指導所의 設置現況 | V. 漁村指導事業의 活動評價 |
| 2. 漁村指導公務員 現況 | 1. 指導活動에 대한 一次元 分析 |
| 3. 漁村指導事業費 豐算 | 2. 指導活動에 대한 二次元 分析 |
| 4. 漁村指導 裝備 | VI. 結論 |
| III. 漁村指導活動의 内容과 方法 | 參考文献 |
| 1. 漁村指導活動의 内容 | |

I. 序論

1. 研究目的

漁村指導는 水產技術開發活動과 더불어 水產業의 振興과 漁業經營의 近代化를 圖謀함에 있어서 필요한 2大 基本課題의 하나이다. 따라서 日本을 비롯한 主要 水產國에서는 이 두 活動을 國策의 으로 併用해 나가는 것이 보통이며, 水產에 관한 基本政策으로 이를 採擇하여 積極 推進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새로운 水產技術과 知識을 全漁村에 廣範圍하게 普及함으로써 ① 食糧生產의 基盤構築과 함께 ② 活力있는 漁村社會의 建設이라는 國家的 役割의 遂行, ③ 個別 漁民의 事業化의 促進, 그리고 ④ 長期的인 側面에서 漁民에 대한 問題解決 能力を 增進시키고자 하는 것 등을 基本目標로 하는 活動인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漁村指導事業이 本格化된 것은 70年代 後半부터이며, 80年代에 와서 이것은 浅海養殖 技術開發의 促進에 수반하여 同部門의 生產伸張에 主導的인 役割을 遂行하였다. 그結果 生產增大는 물론, 漁村民들의 漁村定着意志를 強化하고 養殖業의 事業化와 漁村地域의 均衡의 發展에 寄與하였다라는 점에서 높이 評價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점에 漁村指導事業의 重要性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水產物 需要의 急增과 漁民所得의 相對的 低位에 대한 問題解決

* 이 研究는 國立水產振興院 漁村指導所의 調查協力を 얻어 이루워진 것이다.

** 釜山水產大學 水產經營學科 副教授

수 산 경 영 톤 집

을 위해서는 이러한活動의 增大를 더욱 必要로 하고 있다.¹⁾ 本論文은 위와 같은 視覺에서 現在 國立水產振興院의 主管으로 실시되고 있는 漁村指導事業에 대하여 그의 直接的 遂行機關인 漁村指導所의 現況과 指導活動의 內容, 나아가서 漁村指導事業의 方法 등을 分析 및 評價함으로써 今後에 있어 요청되는 漁村指導事業의 活性化 方向을 模索하는데 必要한 情報提供에 目的을 두고 있다.

2. 研究方法

本論文에서는 現行의 漁村指導所가 實施하고 있는 漁村指導事業의 分析과 評價를 위한 基礎資料를 수집하기 위하여 實제로 指導를 받고 있는 漁民을 一般漁民과 漁民後繼者로 區分하여 設問調查를 實施하였으며, 또한 實제로 漁民을 指導하는 業務를 맡고 있는 漁村指導公務員과 漁村指導事業과 關係가 있는 有關機關의 任職員, 公務員 및 研究員도 調查對象에 포함시킴으로써 廣範圍한 범위에 걸쳐 調查對象者를 選定하여 調査를 實施하였다. 다음에 자세한 標本抽出方法 및 調査過程에 대해 詳述하기로 한다.

1) 標本抽出

本論文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調査對象者를 一般漁民, 漁民後繼者, 地區別水產業協同組合任職員, 市·郡水產公務員, 水產廳水產公務員,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任職員, 水產振興院산하 水產研究所研究員 및 漁村指導所의 漁村指導公務員 등으로 選定하고, 이들을 無作爲 標本抽出方法(random sampling technique)에 의해 標本을 抽出하였다. 各 調査對象者別 標本抽出方法은 다음과 같다.

① 漁民

1986年의 漁民後繼者數 2,840名을 母集團으로 하여, 各道別 漁民後繼者의 數에 比例하여 標本數를 比例配分한 다음, 比例配分된 各道의 標本數를 다시 漁船漁業 後繼者, 養殖漁業 後繼者, 複合漁業 後繼者의 數로 比例配分하여 總漁民標本數를 決定하였다. 이 中에서 漁民後繼者의 選定은 어민후계자 명단을 利用하여 위에서 決定된 各道別 從事類型別 標本數를 單純無作爲 標本抽出(simple random sampling)에 의해 選定하였으며, 한편 一般漁民의 選定은 위에서 決定된 漁民後繼者로 하여 1名의 漁民을 無作爲 抽出하도록 하여 選定하였다.

② 漁村指導公務員

1986年 現在 先任指導所(9個), 一般指導所(11個), 市·郡駐在指導所(20個)를 母集團으로 하여 各指導所에 在職하고 있는 漁村指導公務員 全員을 調査對象 漁村指導公務員으로 選定하였다.

③ 農村指導公務員

1986年 現在 全國沿岸에 散在해 있는 73個의 農村指導所에 在職하고 있는 農村指導公務員을 母集團으로 하여 無作爲 抽出에 의해 調査對象者를 選定하였다.

④ 地區別水協 任職員

全國의 56個 地區別水協을 母集團으로 하여, 여기서 無作爲 抽出에 의해 35個의 地區別水協을 第1

1) M. Ben-Yami, A. M. Anderson, Community of Fishery Centres: guidelines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FAO, 1985, pp. 1—4.

漁村指導事業의 評價

次抽出單位로 抽出하였다. 다음에 第2次抽出單位로 選定된 各 地區別 水協의 任職員중에서 140名을 無作爲抽出하여 調查對象 地區別水協 任職員으로 選定하였다.

⑤ 市·郡 水產公務員

全國의 76個연안 市·郡廳을 母集團으로 定하고, 이 중에서 無作爲抽出에 의해 35個의 市·郡廳을 抽出한 다음, 抽出된 35個의 市·郡廳에서 각각 2名씩 無作爲로 選定하여 標本 市·郡의 水產公務員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⑥ 水產研究所 研究公務員

國立水產振興院 산하 水產研究所(12個)를 母集團으로 하여 各 研究所에서 2名씩 無作爲抽出에 의해 水產研究所 公務員을 選定하였다.

⑦ 水產廳 公務員 및 水協中央會 任職員

水產廳과 水協中央會에서 漁村指導業務와 關係하고 있는 部署의 職員중에서 각각 20名씩 無作爲抽出하여 標本을 選定하였다.

2) 調査票作成

本 研究에서는 調査對象者の 性格이 相異한 關係로 調査票의 樣式을 4가지로 區分作成하였다.
調査票樣式과 調査對象者は 각각 다음과 같다.

調査票樣式 I ……漁村指導公務員 對象의 調査票

調査票樣式 II ……市·郡 水產公務員, 地區別水協 任職員, 水產廳 公務員, 水協中央會 任職員 및 水產研究所 研究職公務員 對象의 調査票

調査票樣式 III ……農村指導公務員 對象의 調査票

調査票樣式 IV ……一般漁民 및 漁民後繼者 對象의 調査票

3) 豫備調查

漁村의 漁業實態와 漁村指導所, 農村指導所, 市·郡水產課, 水協 등 機關의 漁村指導事業 現況 및 이에 대한 漁民들의 反應度를 먼저 파악한 다음, 實際調查票를 作成하기 위해서豫備調查班을 2個組로 編成하여 二回에 걸쳐 實施하였다.豫備調查의 期間 및 地域은 다음과 같다.

一次豫備調查 期間 : 1986年 7月 31日 ~ 1986年 8月 2日

↳豫備調查 地域 : 경남 하동, 거제, 남해, 충무, 삼천포

二次豫備設問調查 期間 : 1986年 8月 9日

↳豫備設問調查 地域 및 對象者 : 경남 양산군 판내 어민 및 어민후계자, 양산군청 수산과, 양산수협, 양산농촌지도소 및 어촌지도소

4) 調査實施 方法 및 時期

本 調査 期間 : 1986年 8月 1日 ~ 1986年 9月 20日

本 調査는 調査對象者が 多様하고, 또한 調査地域이 全國에 散在해 있기 때문에 費用과 時間의 制約을 고려하여 郵送調查의 方法을 선택하였다. 調査時期는 1986年 8月 1日부터 1986年 9月

수 산 경 영 론 집

20日까지로 하였다.

5) 集計方法

調査票樣式 I 직급별, 경력년수별, 연령별 및 학력별 集計와 2次元 集計

調査票樣式 II 부처별, 연령별 集計와 2次元 集計

調査票樣式 III 직급별, 경력년수별 및 연령별 集計와 2次元 集計

調査票樣式 IV 어민과 어민후계자별, 어업유형별, 연령별, 경력년수별 集計와 2次元 集計

6) 標本의 分布 및 調査票 回收現況

| 調査對象者 | | 調査票回數現況 | (單位:名) |
|----------|-----|---------|-----------|
| 漁民 | 後繼者 | 500 | 175(35.0) |
| 漁民 | 民 | 500 | 175(35.0) |
| 漁村指導公務員 | | 250 | 238(95.2) |
| 農村指導公務員 | | 250 | 162(64.8) |
| 地區別水協任職員 | | 140 | 105(75.0) |
| 市・郡水產公務員 | | 70 | 60(85.7) |
| 水產研究所公務員 | | 24 | 17(70.8) |
| 水協中央會任職員 | | 20 | 17(85.0) |
| 水產廳公務員 | | 20 | 20(100.0) |
| 計 | | 1,774 | 969(54.6) |

3. 研究範圍

現行 漁村指導事業은 國立水產振興院 主管으로 漁村指導所에서 實施되는 것 외에도 水協系統 組織을 통한 漁村指導事業, 道・市・郡을 中心으로 하는 行政機關의 漁村指導事業 등이 있다. 그러나 水協系統組織과 行政機關은 實施內容, 實績 등이 极히 미비하므로 本研究에서는 漁村指導所의 指導事業을 主研究對象과 研究範圍로 하였다.

II. 漁村指導事業의 現況分析

1. 漁村指導所의 設置現況

漁村指導事業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漁民의 요청과 必要에 응하여 營漁技術과 家計生活에 필요한 지식을 즉시 指導하고 普及할 수 있는 一線指導機關이 必要하다. 그러므로 一線指導機關은 水產業活動이 이루워지고, 漁民의 生活이 營爲되고 있는 漁村現場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곧 漁村地域住民과의 접촉과 대화가 수시로 가능한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따

漁村指導事業의 評價

라서 漁村指導所란 漁村에서 실제로 漁民과 漁場을 中心으로 근대적인 漁業技術指導와 普及을 직접 具現시켜 나가는 漁村現場에 위치한 漁村指導機關을 말하며, 이러한 점에서 이것은 一線漁村指導機關으로도 定義된다. 요컨데 漁村指導組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實行機構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一線指導機關으로서의 漁村指導所가 群單位에 위치할 것인가, 面單位에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對象漁業의 分布特徵, 漁民分布數, 指導事業豫算事情 등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나라의 漁村指導에서는 평균 3個시·郡·읍·면에 1個의 指導所를 두고 있으나, 日本에서는 1個市·郡에 1個漁村指導所, 우리나라의 農村指導에서는 1個面當 1個所씩 設置되어 있다. 水產分野에서 漁村指導所가 실제로 설치된 것은 1981年부터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漁村指導事業은 실시되고 있었으나 一線指導機關이 없는 상태에서 推進되고 있었으며, 국립수산진흥원 支院이 이 役割을 代身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현재의 어촌지도소 설치는 1981年 11月 2日 진흥원 職制改定에 의해 實現되었다. 그리하여 1981年 12月에 처음으로 8개의 漁村指導所를 설치한 바 있으며, 이어서 1984年度까지 6개所(農水產部令 第912號), 1986年에 6개所(農水產部令 第931號)가 각각 增設됨으로써 現在 全國에는 20개所의 漁村指導所가 設置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미설치된 全國沿岸市·郡을 對象으로 계속 推進할 計劃이다.²⁾ 이와 같은 漁村指導所는 漁民을 對象으로 科學的인 營漁技術의 指導와 이의 普及을 행하여 營漁의 科學化를 통한 生產性의 向上과 漁家所得의 增大를 도모함으로써 福祉漁村을 建設하는 것을 主된 任務로 하는 기관인 것이다.

1985年末 基準의 全國의 漁村指導所設置現況과 指導所別 管轄區域을 보면 <表 II·1>과 같다.

〈表 II·1〉 漁村指導所와 管轄區域 現況

| 市·道別 | 指導所 | 管轄區域 | 지도원수 | 備考 | |
|-------|-------------|--|-------------------------------|---|--|
| 計 | 20個所 | 76個 市·郡 | 173名 | | |
| 京畿(1) | 華城 | 華城郡, 平澤郡, 始興郡, 김포군, 용진군, 파주군, 인천시 | 7 | ※漁村指導所 管轄區域外 沿岸市·郡에는 駐在漁村指導所에 公務員이 配置됨: 77名 (39個市·郡) | |
| 江原(2) | 東草東海 | 東草市, 高城郡, 강릉郡, 양양군, 평창군 東海市, 三陟郡 | 8 6 | | |
| 忠南(2) | 瑞山保寧 | 瑞山郡, 唐津郡, 芽山郡, 논산군, 부여군, 서천군 保寧郡, 洪城郡 | 10 | | |
| 全北(1) | 扶安 | 扶安郡, 高敞郡, 金堤郡, 군산시, 익산군 | 9 | | |
| 全南(6) | 莞島珍島靈光海南高麗川 | 莞島郡, 목포시, 순천시 珍島郡, 나주군, 신안군 靈光郡, 咸平郡, 영암군, 무안군 海南郡, 장흥군, 해남군, 강진군 高麗郡, 응주군, 곡성군 麗川郡, 여수시, 광양군 | 14 9 6 7 10 10 | | |
| 慶北(2) | 鬱陵迎日 | 鬱陵郡, 울진군 浦項市, 迎日郡, 영덕군, 월성군, 금릉군 | 5 9 | | |
| 慶南(5) | 三千浦南忠馬巨濟 | 三千浦市, 泗川郡 南海郡, 河東郡 忠武市, 統營郡, 고성군 馬山市, 昌原市, 鎮海市, 義昌郡 巨濟郡 | 8 11 11 8 7 | | |
| 濟州(1) | 北濟州 | 濟州市, 北濟州郡, 남제주군 | 8 | | |

2) 國立水產振興院, 1986年度 漁村指導事業報告書, 1986, p. 69.

수·산·경·영·론·집

〈表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漁村指導所는 현재 全國 총 沿岸市·郡 76個 가운데서 27%에 해당하는 20個所에 設置되어 있으며, 56個 市·郡에는 아직 未設置되어 있는 실정이다. 농촌지도소는 市·郡에는 물론, 그 하부인 邑·面에 까지도 全國의 으로 一線指導所가 設置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對照的이다. 따라서 漁村指導所는 현재 1個指導所가 平均 3個郡以上的 指導範圍를 管轄하고 있으며, 對象漁家의 數도 평균 760戶로서 현재 農村指導公務員 1人當 270戶에 비해서는 2.8倍, 日本의 1指導員當 평균이 가수 500戶에 비해서는 1.5倍가 더 많은 과중한 지도업무량을 가지고 있다.

漁村指導所가 未設置되어 있는 곳에서는 地區別 水協 등에 指導員 駐在事務室을 設置하여 管轄 市·郡地域의 漁村指導에 임해 나가고 있다. 漁村指導公務員 活動指針 第3條에 의하면 國立水產振興院은 漁村指導所가 設置되어 있지 않는 연안 시·군에 대하여는 지구별 수협이나 진흥원 산하 수산연구소에 지도원을 駐在시켜 관내지역의 어촌지도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의 어촌지도공무원을 행정의 領의상 「市·郡駐在 指導員」으로, 지도원이 駐在하고 있는 수협이나 수산연구

〈表 II-2〉 駐在指導所 配置狀況 및 駐在 指導員 現況(1986)

| 주재지도소명 | 주재지도소 소재지 | 관할구역 | 지도원수(명) |
|---------|-----------|-----------------------|---------|
| 양양주재지도소 | 양양군수협 | 양양군, 고성군 일원 | 2 |
| 명주 | 주문진 수산연구소 | 명주군, 강릉군 일원 | 2 |
| 울진 | 후포수협 | 울진군 일원 | 3 |
| 영덕 | 강구수협 | 영덕군, 금릉군 일원 | 3 |
| 월성 | 월성군수협 | 월성군 일원 | 2 |
| 울산 | 울산수협 | 울산시, 울주군 일원 | 3 |
| 양산 | 양산군수협 | 양산군 일원 | 3 |
| 부산 | 부산시수협 | 부산시, 김해군 일원 | 4 |
| 고성 | 고성군수협 | 고성군 일원 | 4 |
| 여수 | 여수 수산 연구소 | 여수시, 광양군, 순천시 일원 | 6 |
| 보성 | 보성군수협 | 보성군, 송주군 일원 | 2 |
| 장흥 | 장흥군수협 | 장흥군, 영암군 일원 | 5 |
| 강진 | 강진군수협 | 강진군, 곡성군 일원 | 2 |
| 목포 | 목포 수산 연구소 | 목포시, 무안군 일원 | 5 |
| 신안 | 신안군수협 | 신안군, 나주군 일원 | 9 |
| 군산 | 군산 수산 연구소 | 군산시, 익산군 일원 | 4 |
| 서천 | 장항수협 | 서천군, 논산군, 부여군 일원 | 3 |
| 인천 | 인천 수산 연구소 | 인천시, 파주군, 김포군, 옹진군 일원 | 8 |
| 강화 | 강화군수협 | 강화군, 일원 | 3 |
| 서귀포 | 제주 수산 연구소 | 남제주군 일원 | 4 |
| 계 | 20개 | 수 협 : 14 수산연구소 : 6 | 39개 시·군 |
| | | | 77 |

자료 ① 국립수산진흥원 훈령, 어촌지도공무원 활동지침, 훈령 제 143호(84.4.28일 제정, 85.7.6 개정)
 ② 국립수산진흥원, 어촌지도 활동 상황 보고, 1985.12.

漁村指導事業의 評價

소를 「駐在指導所」로 각각 칭하고 있다. 이 점에서 지구별 수협이나 수산연구소는 어촌지도 사업에 있어 가장 관계 깊은 有關機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駐在指導員의 駐在地는 거의가 地區別 水協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지도원 수는 전체 250명의 30.8%인 77명이다.

2. 漁村指導公務員 現況

漁村指導所에 常駐하면서 漁村에서 직접 指導活動을 擔當하는 公務員을 漁村指導公務員이라 한다. 이와 같은 指導員 職制의 設置는 1976年의 진홍원 職制改正에서 비롯되었다. 1976年 6月 11日 대통령령 제8,150호로 진홍원 職制를 改定 하고, 正規職 公務員 4級 및 5級을 指導專擔公務員으로 採用하는 등 지도체계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76年에 처음으로 水產職公務員 82名을 公採에 의해 確保한 이후, 1978年에 55名, 1979年에 45名, 1980年에 30名, 1984年에 20名, 1985年에 18名을 각각 增員하여 1986年 現在는 총 250名의 漁村指導公務員을 確保하고 있다.

한편 이들 漁村指導公務員은 전국 20개 어촌지도소에 전체의 69.2%인 173명이 配置되어 37個 市郡을 관할하고 있으며, 나머지 30.8%인 77명은 지구별 수협 등을 주재지도소로 하는 29개 주재지도소에 배치되어 39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배치지역은 다음 <그림 I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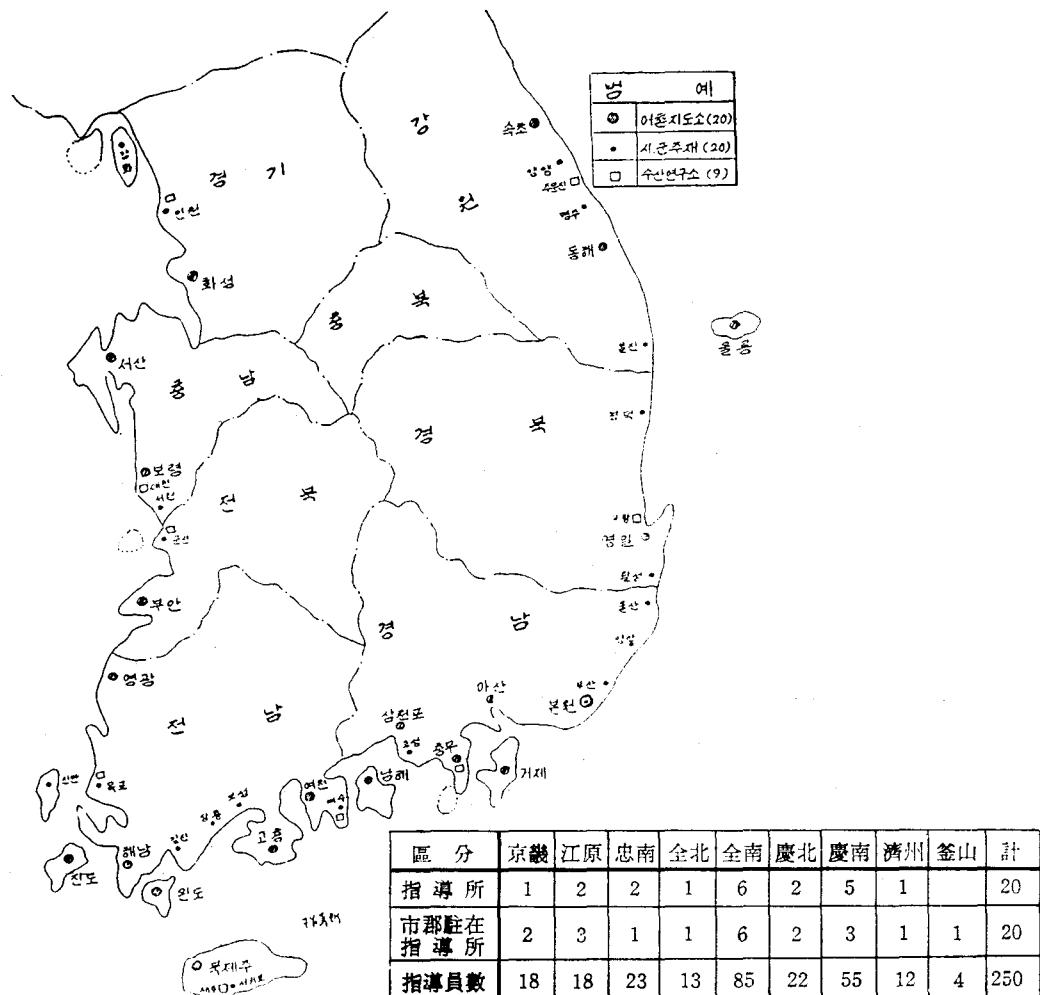
漁村指導所의 指導機能을 補強하기 위하여 國立水產振興院은 1985年 4月 26日字로 職制改正(大統領令 第11,691號)을 斷行하고 漁村指導所를 從前의 진홍원 支院 산하에서 獨립시켜 국립수산진홍원에 직속시킴으로써 獨自的인 기능을 수행하게 함과 同時에, 漁村指導所長의 職級을 종전의 6級에서 5級으로 格上시키는 등 指導體制를 強化하였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상 漁村指導公務員이 固有職列로 獨立된 것은 1985年 부터이다. 즉 1985年 12月 31日字로 「研究·指導 및 醫療職公務員의 任用 등에 관한 規程」(大統領令 第11837號)을 改正하고, 동 규정 별표 1-②에 처음으로 「漁村指導 職列」을 新設하여 漁村指導業務의 專門性을 期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전까지 수산청직제와 内규로서 규정하고 있었던 어촌지도담당공무원은 법적으로 전문성이 부여된 것이며, 漁村指導業務에 從事하고 있던 水產職公務員 250名 全員은 單一號奉制의 「漁村指導職」에 任命되었다. 그리하여 종전의 水產技佐(5級) 13명은 「漁村指導官」으로, 水產技士(6級) 46명과 水產技仕補(7級) 84명 및 水產技員(8級) 107명을 합친 237명 전원은 「漁村指導士」로 각각 재임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³⁾ 이들이 곧, 現在 漁村指導專擔要員이며, 이들 250명 전원은 全國의 20個 漁村指導所와 地區別 水協 등에 配置되어 漁民을 對象으로하는 現地 漁村指導에 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指導員의 數는 적어도 같은 指導公務員인 農村指導公務員 1人의 業務量과 비슷한 水準으로 유지하는 데는 현재의 총인원에서 약 2倍以上 增員이 실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指標에 의해 主張되고 있다. 1986年末 現在 漁村指導公務員의 指導對象 및 지도활동영역을 규정하는 漁民數, 漁家戶數, 漁村契數, 沿岸漁業權 漁場數 및 後繼者數 등을 農村指導事業과 비교하면 指導公務員 1人當 指導活動範圍는 漁村指導公務員이 平均 581戶의 漁家, 2,865名의 漁民, 13個의

3) 前揭書, pp. 68-69.

수 산 경 영 룬 침

〈그림 II·1〉 漁村指導所 位置 및 配置地域



마을들과, 그리고 8名의 漁民後繼者를 각각 그 對象으로하고 있는데 반해, 農村指導公務員은 平均 250戶의 農家, 1,214名의 農民, 5個의 마을, 그리고 2名의 農民後繼者를 그 對象으로 하고 있어 漁村指導公務員은 2倍이상의 업무량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表 II·3 및 4 參照)

1986年 3月 現在로 파악된 漁村指導公務員의 實態를 통해서⁴⁾ 漁村指導公務員의 人格的 特性을 파악해 보면 먼저 勤務年數에 있어서 7~10年이 32%, 5~7年이 28%, 3~5年이 16%로 나타났으며, 年齡分布는 30~35才가 38%, 25~30才가 30%, 35~40才가 17%, 40才이상이 15%로 밝혀졌다. 한편 經歷面에서는 5~10年이 60%로서 가장 많고, 年齡面에서는 대부분이 40才미만에 분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漁村指導公務員의 學歷分布를 보면 水產系 學校出身이 전체 250명의 94%로서 235명이고, 非水產系 出身은 6%인 15명에 불과하여 거의 전부가 水產系 出身으로 구성되어 있다. 水產系出身의 경우는 高卒이 95名(38%), 水產專門大卒이 105名(42%), 그리고 大卒이 35名(14%)

4) 前揭書, pp. 101~102.

漁村指導事業의 評價

〈表 II·3〉

漁村指導對象의 分布

| 區 分 | 漁 民 | 漁家戶數 | 漁後繼者 | 漁村契 | 共漁業權 | 養殖業權 | 島 嶼 | 沿岸市郡 |
|-----------|--------|-------|--------|---------|--------|--------|-------|------|
| 指 導 對 象 | 768千名 | 145千戶 | 1,994名 | 1,498個所 | 2,415件 | 6,865件 | 554個所 | 74個所 |
| 指 導 員 1人當 | 2,865名 | 581千戶 | 8名 | 6個所 | 10件 | 27件 | 2個所 | 3個所 |

〈表 II·4〉

農漁村 指導員 1人當 指導對象 對比

| 區 分 | 漁 村 (A) | 農 村 (B) | A/B |
|---------|---------|-----------------------|-----|
| 家 口 數 | 581戶 | 250戶 | 2.4 |
| 人 口 數 | 2,865名 | 1,214名 | 2.4 |
| 마 을 數 | 13個所 | 5個所 | 2.6 |
| 後 繼 者 數 | 8名 | 2名 | 4.0 |
| 指 導 所 數 | 20個所 | 179個所 (支所 1,454個所) | |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非水產系 出身 15명의 學歷은 高卒이 8名(3%), 專門大卒이 4名(2%), 大卒이 3名(1%)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大卒이 10%, 專門大卒이 44%, 그리고 高卒이 46%로서 같은期間에 수산직공무원 289명의 학력분포 大卒 33%, 專門大卒 30%, 그리고 高卒 37%와 比較하면 指導職의 學歷이 다소 떨어진다. 그러나 농촌지도공무원에 비해서는 결코 낮지 않다. 한 農村指導 연구에 따르면 전남지방 132名의 농촌지도공무원의 학력구성은 高卒 76%, 專門大卒 10%, 大卒 14%인 것으로 밝혀진다.⁵⁾

漁村指導公務員의 專攻分野別 分布를 보면 養殖分野가 121名으로서 48%, 漁業分野가 58名으로서 23%, 加工分野가 52名으로서 21%, 機關分野가 8名으로서 2%, 기타 11名으로서 5%로 나타났다. 漁村의 技術需要가 주로 증양식어업기술에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指導公務員의 專攻分野에서 양식분야 전문요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현실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50

〈表 II·5〉

學 力 別 分 布(1986)

(單位: 名)

| 區 分 | 計 | 大 卒 | 專 門 大 | 高 卒 |
|---------------------------------|------------|--------|---------|---------|
| 漁 村 指 導 員 | 250名(100%) | 38(15) | 109(44) | 103(41) |
| 全 體 水 產 職 公 務 員 (水產廳 및 傘下機關) | 289名(100%) | 96(33) | 85(30) | 108(37) |

()안의 숫자는 構成比임.

〈表 II·6〉

專攻分野別 分布(1986)

(單位: 名)

| 計 | 養 殖 | 漁 捞 | 加 工 | 機 關 | 其 他 |
|----------------|-------------|------------|------------|--------|---------|
| 250名 (100%) | 121 (48) | 58 (23) | 52 (21) | 8 3 | 11 5 |

〈表 II·7〉

系列別 分布

| | |
|---------|----------|
| 수 산 계 | 235 (94) |
| 비 수 산 계 | 15 (6) |
| 계 | 250(100) |

5) 李漢相, 一線農村指導事業의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全南大 大學院, 1985.

수 산 경 영 론 집

%의 다른 전문요원의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어촌 현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表Ⅱ·5, 6, 7> 참조)

3. 漁村指導事業費 豫算

一般的으로 傳統的인 指導事業論에서는 指導事業豫算自體를 輕視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것은 豫算이 물론 指導目的達成에 必要要件이기는 하나, 이미 이것은前提된 것으로 규정하고 그 위에서 指導의 方法, 過程 및 그 内容에 관한 것만을 核心的으로 취급해온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分野를 하나의 政策的 事業 내지 特定 目的達成을 위한 事業으로 보지 않고 사회교육의 一種으로서, 또는 社會學의 한 特殊分野로 취급해 온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본다. 곧 事業費에 관한 문제는 指導事業論에서는 第二義的인 存在이며, 重要한 것은 指導主體의 役割, 被指導者의 指導內容에 대한 受容態度, 普及技術의 傳達方法과 그 過程 등에 관한 分析이 中心이 된다고 하는 見解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소개되고 있는 農村指導論에 있어서도 指導事業費에 관해서는 전혀 論外로 하거나, 설사 간략히 言及한다 해도 한두면에 걸쳐 年別 예산액을 밝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内容은 다음에 例를 드는 農村指導論의 内容構成을 통해서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즉, 1973年에 刊行된 金의 「農村指導論」⁶⁾을 보면 총 274面에 11個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指導豫算에 관한 分析은 하나의 項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어 1979年 刊行된 權의 「農村指導論」도 총 238面에 9個章을 設定하였으나 역시 예산내용은 項의 수준을 넘지 않고 있다.⁷⁾ 가장 最近에 發刊된 崔 등의 「新制農村指導論」⁸⁾은 分量, 體制 및 理論의 面에서 가장 훌륭한 것으로 評價되나 8個章으로 나누어 319面에 걸친 指導事業論의 原理, 方法, 評價 등은 상세히 서술하면서도豫算問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나 最近 FAO가 추천하고 있는 「指導事業指針」(Guide to Extension, 1985)에서는 종래의 이러한豫算輕視傾向을 합축적으로 批判한다.⁹⁾ 예를 들어 현실의 指導事業이 國가발전의 균형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복지수준의 향상이라는 次元에서 產業, 地域 및 住民의 開發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수행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指導事業計劃樹立의 기본과정을 「地域實情의 把握—指導目標의 設定—실천계획의 具體化」라고 하는 내용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現實과 유리된 것이라고 하면서 指導事業費의 重要性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비드필드」는 지도사업계획(Extensive programs)은 一般的으로 두가지 接近方法에 의해 구체화 되는데, 어느 접근방법에 의한 計劃에 있어서 전 「資源」, 소위 「豫算」 등에 관한 것은 모든 指導事業計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要求되는 4大 基本要素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2가지 「指導事業接近計劃」이란 하나는 國家目標實現을 위한 지도사업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地域住民欲求實現을 위한 指導事業을 뜻한다.¹⁰⁾ 전자의 경우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 또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지도목표를

6) 金利泰, 近代農村指導論, 先進文化社, 1973 참조.

7) 權元達, 農村指導論, 先進文化社, 1979 참조.

8) 崔敏浩外 4人共著, 新制 農村指導論, 經文社, 1982 참조.

9) D.J. Beadfield, Guide to Extension, FAO, 1985, p.105.

10) Ibid, p. 106.

漁村指導事業의 評價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지도사업의 주된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서, 후자의 경우는 住民들의 欲求를 파악하여 이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效果的으로 실현, 내지는 充足시키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지도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前者를 위로 부터의 계획이라하면, 後者は 아래로 부터의 계획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¹¹⁾ 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지도계획은 반드시 다음의 4가지 또는 5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이것을 그는 지도사업계획의 기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¹²⁾ 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表 II·8>과 같다.

<表 II·8> 指導事業 接近計劃 方法

하향적 계획요소(국가목표 실현을 위한 지도사업) : 目標의 設定 —— 手段(方法)의 選擇 —— 資源의 確保 —— 實踐計劃

상향적 계획요소(주민욕구 실현을 위한 지도사업) : 欲求의 把握 —— 優先順位 決定 —— 手段의 選擇 —— 資源의 確保 —— 實踐計劃

위에서 指導事業費豫算은 資源(resources)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物的 資源으로서의 豫算과 人的 資源으로서 指導員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漁村指導에 있어서 指導事業費豫算은 위에서 본 지도사업수행의 기본요건이라는 시각에서 分析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漁村指導事業은 漁村指導組織과 人力 및 豫算 등 3要件이 充足 될 때 비로소 推進力を 發揮할 수 있는 것이다. 이 3요건이 未充足되는 指導事業은 名目에 불과한 사업이 되고 만다. 이는 과거의 漁村指導政策이 잘 말해 주고 있는 바다. 특히 漁村指導事業을 活性化 하고자 하는 경우 豫算是 다른 어느 要因 보다 그 比重이 큰 活力素役割을 한다. 현행 漁村指導政策에 있어서와 같이 所要財源을 收益者負擔原則이 아닌 전액 국가지원으로 하는 指導事業의 경우에는 격렬한 豫算의 뒷바침 없이는 시설, 장비, 지도원의 資質向上 등 어느 하나도 基本要件을 具備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本研究를 통해 실시한 漁民과 指導公務員들에 대한 設問調查結果 특히 漁村指導所의 施設, 裝備, 活動費, 지도원의 數, 그리고 지도공무원의 士氣 및 職務滿足度 등에 있어서 自·他 모두가 극히 낮은 評價를 내리고 있는 것은, 그 주된 요인이 바로 指導事業費豫算의 절대적 不足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漁村指導事業豫算是對比해 보면 <表 II·9·10 및 11>과 같다.

<表 II·9>는 漁村指導事業費豫算에서 指導公務員의 人件費와 指導所建物의 新築費 등 固定費를 差減한 순사업비예산을 意味한다. 1975年을 基準으로 하여 보면 이 事業費는 1978年부터 증가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하며, 漁村指導所의 設置가 認定된 1981年부터는 대폭擴大되었다. 1975年에 43,759千원의 사업비는 1978年에는 81,131千원으로 2倍가 증가되었고, 1981年에는 132,103千원으로, 그리고 최근 1985年的 예산규모는 227,034千원에 달함으로써 1975年에 비해 5倍의 증가를 가져왔다.

11) Ibid, p.106.

12) Ibid, p.107~108.

수 산 경 영 론 집

<表 II·9>

年度別 漁村指導公務員·漁村指導所·指導事業豫算

| 年 度 | 75 | 76 | 77 | 78 | 79 | 80 |
|---------------|----------|----------|----------|---------|----------|--------|
| 지 도 공 무 원 (名) | 82 | 82 | 82 | 137 | 182 | 212 |
| 지 도 소 수 (個所) | - | - | - | - | - | - |
| 사업비 예산(千원) | 43,759 | 13,988 | 39,750 | 81,131 | 88,182 | 70,064 |
| 지도원 1인당(〃) | 522.6 | 170.6 | 484.6 | 592.2 | 484.5 | 330.5 |
| 지도소 당(〃) | - | - | - | - | - | - |
| 사업비 증가율(%) | 100.0 | 31.9 | 90.8 | 185.5 | 201.5 | 160.1 |
| 年 度 | 81 | 82 | 83 | 84 | 85 | |
| 지 도 공 무 원 (名) | 212 | 212 | 212 | 232 | 250 | |
| 지 도 소 수 (個所) | 8 | 8 | 8 | 14 | 20 | |
| 사업비 예산(千원) | 132,103 | 181,144 | 171,646 | 127,705 | 227,034 | |
| 지도원 1인당(〃) | 623.1 | 892.2 | 809.2 | 550.5 | 908.1 | |
| 지도소 당(〃) | 16,512.8 | 23,643.0 | 21,455.7 | 9,121.8 | 11,351.7 | |
| 사업비 증가율(%) | 301.9 | 432.2 | 392.3 | 291.8 | 518.8 | |

註: 1) 1975년을 基準年度로 한 것은 1963년에 설치되었던 지도과를 폐지한 후 1974년에 다시 설치하면서
지도업무의 재정비를 시작한 때가 1975년이기 때문임.

2) 연도별 지원수 및 지도소의 수는 누계치임.

3) 지도사업비 예산은 지도담당 공무원의 인건비와 지도소 건물신축비가 제외된 순 사업비임.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연구보고 제24호, 1980, p. 35.

국립수산진흥원, 어촌지도활동실적보고서, 1980~1986 참조.

<表 II·10>

漁村指導事業費相對比較

(單位: 千원)

| 연 도 | 어촌지도사업 (A) | | 농촌지도사업 (B) | | $\frac{A}{B} \times 100 = %$ | | 총지도사업비 | |
|------|------------|-------|------------|-------|------------------------------|-------|------------|---------|
| | 지도원 1人 | 어가 1戶 | 지도원 1人 | 농가 1戶 | 지도원 1人 | 가구 1戶 | 농촌지도비 | 어촌지도비 |
| 1975 | 522.6 | 0.3 | 727.8 | | 73.3 | | | |
| 1976 | 170.6 | 0.1 | 997.4 | | 17.1 | | | |
| 1977 | 484.8 | 0.3 | 996.2 | | 48.7 | | | |
| 1978 | 592.2 | 0.5 | 1,334.8 | 4.6 | 44.4 | 11.1 | 10,187,351 | 81.131 |
| 1979 | 484.4 | 0.6 | | | | | | 88.182 |
| 1980 | 330.5 | 0.4 | 1,711.9 | 6.3 | 19.3 | 6.3 | 13,661,256 | 70.064 |
| 1981 | 623.1 | 0.9 | 2,196.1 | 8.6 | 14.7 | 10.5 | 17,522,730 | 132.103 |
| 1982 | 892.2 | 1.3 | 2,473.7 | 10.6 | 36.1 | 12.3 | 21,892,334 | 181.144 |
| 1983 | 809.2 | 1.2 | 2,478.8 | 10.9 | 29.4 | 11.0 | 21,932,427 | 171.646 |
| 1984 | 550.5 | 0.9 | 3,203.1 | 12.9 | 17.2 | 6.9 | 25,587,865 | 127.705 |
| 1985 | 908.1 | 1.6 | 3,352.2 | 13.5 | 27.1 | 11.5 | 26,747,222 | 227.034 |

註: 1) 지도원 1人당 사업비 = [지도사업총예산 - (지도원 인건비 + 지도소신축비)] ÷ 지도원수

2) 호당지도사업비 = [지도사업 총예산 - (지도원 인건비 + 지도소인건비)] ÷ 산업별호수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연구보고 제24호, 1980, P.25.

국립수산진흥원, 어촌지도사업보고서, 1986.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사업보고서, 1986.

漁村指導事業의 評價

〈表 II·11〉

指導事業費構成對比(1985)

(單位: 千원, %)

| 어 | | 총 | | 농 | | 총 | |
|---|---|---|---|---|----------------|---|-------------------|
| 지 | 도 | 내 | 용 | 사 | 업 | 예 | 산 |
| 기 | 술 | 지 | 도 | 비 | 106,120 (46.7) | 농 | 총 |
| 어 | 민 | 교 | 육 | 비 | 7,789 (3.4) | 총 | 지 |
| 기 | 술 | 홍 | 보 | 비 | 37,042 (16.3) | 지 | 도 |
| 기 | 반 | 조 | 성 | 비 | 26,470 (11.6) | 농 | 보 |
| 후 | 체 | 자 | 양 | 성 | 3,067 (1.4) | 보 | 급 |
| 운 | 영 | 비 | | | 46,546 (20.6) | 특 | 수 |
| | | | | | | 사 | 업 |
| | | | | | | 예 | 산 |
| | | | | | | | |
| 계 | | | | | 227,034(100.0) | 계 | 26,747,222(100.0) |

資料: 表 II·10과 같음.

그러나 漁村指導事業費의 이러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農村指導事業費에 비해서는 그의 수준이 상대적 절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表 II·10〉을 통해서 볼 수 있는 漁村指導事業費의 相對比較에 의하면 指導員 1人當 漁村指導事業費는 農村指導事業의 절반수준에도 미달하고 있다. 예를들어 최근 1985年的 경우 漁村指導員 1人當豫算은 908千원으로서 農村指導員의 1人當豫算의 27.1%에 불과하다. 이를 다시 指導對象인 漁家 또는 農家 1戶當豫算額을 相對指標로 삼아 서로 비교해 보기로 하면 漁村指導事業에서는 家口當 1978年에 5백원, 1982年에 13백원, 1985年에 16백원 수준에 불과한 예산이지만, 農村指導事業에서는 같은 기간에 46백원, 106백원, 그리고 135백원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漁村指導事業에 비하여 약 9倍 가까운 예산규모를 確保하고 있다. 〈表 II·11〉은 漁村指導事業과 農村指導事業의 重要活動內容別豫算額을 비교한 것이다. 양기간에 共通要素는 技術弘報費와 官署運營費의 2項目 밖에 없다. 漁村指導는 農村指導에 비해 기술홍보비와 관서운영비의 상대적 비중이 높은 반면에 農村指導는 예산의 70% 이상을 實際指導에支出하고 있다. 그러나 漁村指導事業에 있어서는 漁村指導費 총액의 46.7%를 技術指導費에 충당하고 있는 사실로 부터 技術指導에 重點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農村指導에서는 經營指導費, 營養改善費 등의 費目을 設置하고 있는데 대해, 漁村指導에서는 이와 같은 活動에 制限을 받고 있다.

以上의豫算分析을 통해서 볼 때 漁村指導事業은 農村指導事業에 비하여 아직도 상당수준 뒤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곧 指導公務員 1人當을 기준하면 약 3倍, 指導對象家口 戶當기준에 따르면 약 9倍의 예산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의 하나다. 적어도 현재의 수준에서 3倍이상 예산확대를 가져오지 않으면 農村指導事業과 동등수준의 指導活性화를 꾀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은 自明하다.

4. 漁村指導裝備

指導裝備는 指導力을 形成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수한 장비의 充分한 確保는 漁村指導事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課題이다. 여기에는 漁民들의 生產現場에서 養殖對象種의 幼生觀察, 種苗의

수 산 경 영 론 집

選別, 水溫이나 比重의 測定, 水質이나 低質의 調査 등에 活用되는 技術裝備와 指導公務員들의 機動力を 增進시키는 自動車, 二輪車, 指導船, 自轉車 등의 機動裝備, 그리고 集團指導 등을 위하여 지도원이 어민들에게 지도내용을 文字나 言語 등으로 傳達하는 과정을 補充하는데 活用되는 시청각 機資材 등으로 구성되는 弘報裝備 등 크게 3種의 指導裝備로 區分되는데, 1985年末 현재 진홍원 어촌지도 계통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현황은 다음 <表 II·12>과 같다.

<表 II·12>

指導裝備保有現況

1985年 12月末 現在

| 機動裝備 | 品名 | 二輪車 | 指導船 | 自轉車 | 自動軍 | | |
|------|----|-----|-----|-------|------|-------|-----|
| | 數量 | 54台 | 2隻 | | | | |
| 技術裝備 | 品名 | 顯微鏡 | 照度計 | 中層採水器 | 透明度板 | 標準溫度計 | 照天秤 |
| | 數量 | 80台 | 25台 | 35台 | 52個 | 16個 | 22台 |
| 弘報裝備 | 品名 | 影寫機 | 幻燈機 | V T R | 카메라 | 攝影機 | 錄音器 |
| | 數量 | 15台 | 20台 | 1台 | 8台 | 3台 | 21台 |

※ 水溫計, 比重計, 메스길린더, 表層採水機 등 消耗性 裝備는 除外되었음.

자료 : 국립수산진흥원, 지도과 제공, 1986.

먼저 技術裝備에 관해서 살펴보면 漁村指導員이 指導活動中에 휴대하거나 個別的으로 保有하면서指導에 임해야 하는 重要指導裝備에는 현미경, 조도계, 종총채수기, 표총채수기, 투명도판, 표준온도계, 조천평, 염분계, 스쿠바, 수질측정기, 수온계, 비중계, 메스시린더, 디바이더, 시린다, 프랑크톤넷드, 시계접시, 프랑크톤판, 스포이드 등 19종이 있다. 이 가운데서 水溫計, 比重計, 메스시린더, 표총채수기 등 4종은 소모성장비로 分類되나, 나머지 15종은 모두 長期保管型 技術指導裝備에 속한다. 효과적인 漁民指導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술장비의 보유기준이 현미경의 경우는 적어도 지도원 1인당 1개씩, 照度計는 1指導所別로 平均 3個以上이 되어야만 한다고 진홍원 지도과에서는 분석하고 있으나 1986年末 현재 현미경은 所要量 210臺에 80臺를 保有함으로써 32%의 保有率을 나타내며, 130臺가 不足한 실정이다. 다른 技術裝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不足現象을 보여 주고 있다. 養殖水域이 점차 遠隔化되어 가고, 每年 赤潮에 의한 漁場被害의 多發現象에 비추어 이의 原因究明이나 水中 養植物의 成長觀察 등에 절실히 필요한 스쿠버장비나 水質測定器등의 裝備保有를 充分히 活用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와 같은 裝備는 전혀 保有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다음에 機動裝備에 관해 살펴보면 현재 全國의 漁村指導所가 보유하고 있는 機動裝備에는 指導船 2隻과 二輪車(오토바이) 54臺가 그 전부이다. 二輪車는 1人 1臺가 필요하며, 指導船은 적어도 1個 指導所當 1隻은 配置되어야 한다. 상당수의 漁民이 벽지 海岸이나 島嶼地域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漁村指導船舶은 必須的인 手段이며, 이도 單純히 機動力を 위한 輸送手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漁場의 諭察과 觀測을 위해서 指導船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1986年 현재 二輪車는 54臺 밖에 없어 1臺를 指導員 3名이 交代로 使用하고 있는 실정이며, 指導船은 全國에 2隻 밖에 없다. 二輪車의 保有率은 21.6%로서 196臺가 不足하며, 指導船은 18隻을 더 配置해야만 正常的인 指導가 될 수 있다.

漁村指導事業의 評價

마지막으로 弘報用裝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電子工業과 情報產業의 發達로 말미암아 정신 교육에 있어서도 高度의 視聽覺教材 活用의 重要性이 強調되며, 이의 普遍化 過程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어민들에게 漁業技術에 대한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집단지도의 效果를 높이기 위해 서는 近代的인 漁村指導用 弘報裝備의 充分한 普及이 切實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漁村指導所가 保有하고 있는 이들 裝備는 大部分이 積蓄하거나 그나마도 1個 指導所가 환등기·영사기·카메라·VTR 등을 평균 1臺 식도 保有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그러나 漁村指導事業에 있어서 裝備上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水產技術의 發達과 漁業方式의 變化에 對應하여 必要裝備의 保有와 그의 質的 改善을 꾀해 나가는 일일 것이며, 漁村의 社會的 特性을 充분히 고려한 위에서 機動裝備의 數와 種類를 具備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수적 장비인 2륜차와 多目的 裝備인 指導船 및 指導用機器로서 重要한 협미경과 조도계 등 가장 긴급한 구비를 요하는 4가지 장비현황을 전국 어촌 지도소별로 분석해 본 것이 다음의 <表 II-13>이다.

〈表 II-13〉 指導所別 重要 指導裝備保有 現況 分析(1986)

| 裝備 指導所 | 이륜차(台) | | | 어촌지도선(隻) | | | 현미경(台) | | | 조도계(台) | | |
|-----------|--------|-----|------|----------|-----|------|--------|-----|------|--------|-----|-----|
| | 보유량 | 소요량 | 과부족 | 보유량 | 소요량 | 과부족 | 보유량 | 소요량 | 과부족 | 보유량 | 소요량 | 과부족 |
| 화성어촌지도소 | 5 | 18 | 13 | — | 1 | 1 | 5 | 18 | 13 | 2 | 3 | 1 |
| 속초 | 2 | 12 | 10 | — | 1 | 1 | 5 | 12 | 7 | 1 | 3 | 2 |
| 동해 | 1 | 6 | 5 | — | 1 | 1 | 1 | 6 | 5 | 1 | 3 | 2 |
| 서산 | 2 | 10 | 8 | — | 1 | 1 | 4 | 10 | 6 | 1 | 3 | 2 |
| 보령 | 3 | 13 | 10 | — | 1 | 1 | 3 | 13 | 1 | — | 3 | 2 |
| 부안 | 3 | 13 | 10 | — | 1 | 1 | 5 | 13 | 8 | — | 3 | 3 |
| 완도 | 6 | 30 | 24 | 1 | 1 | — | 11 | 30 | 19 | 2 | 3 | 1 |
| 진도 | 2 | 9 | 7 | — | 1 | 1 | 2 | 9 | 7 | 1 | 3 | 2 |
| 영광 | 2 | 6 | 4 | — | 1 | 1 | 1 | 6 | 5 | 1 | 3 | 2 |
| 해남 | 2 | 7 | 5 | — | 1 | 1 | 2 | 7 | 5 | 1 | 3 | 2 |
| 고흥 | 2 | 19 | 8 | — | 1 | 1 | 3 | 19 | 7 | 1 | 3 | 2 |
| 여천 | 4 | 23 | 19 | — | 1 | 1 | 8 | 23 | 15 | 3 | 3 | — |
| 울릉 | 2 | 5 | 3 | — | 1 | 1 | 2 | 5 | 3 | 1 | 3 | 2 |
| 영일 | 4 | 17 | 13 | 1 | 1 | — | 6 | 17 | 11 | 2 | 3 | 1 |
| 삼천포 | 2 | 8 | 6 | — | 1 | 1 | 2 | 8 | 6 | — | 3 | 3 |
| 남해 | 2 | 11 | 9 | — | 1 | 1 | 3 | 11 | 8 | 1 | 3 | 2 |
| 충무 | 3 | 25 | 22 | — | 1 | 1 | 6 | 25 | 19 | — | 3 | 3 |
| 마산 | 1 | 8 | 7 | — | 1 | 1 | 2 | 8 | 6 | — | 3 | 3 |
| 거제 | 1 | 7 | 6 | — | 1 | 1 | 2 | 7 | 5 | 1 | 3 | 2 |
| 복제주 | 3 | 12 | 9 | — | 1 | 1 | 2 | 12 | 10 | — | 3 | 3 |
| 본원지도과 | 2 | 10 | 8 | — | — | — | 6 | 10 | 4 | — | 3 | 3 |
| 계 | 54 | 250 | 196 | 2 | 20 | 18 | 81 | 250 | 169 | 19 | 60 | 41 |
| 보유율(%) | 21.6 | | 10.0 | | | 32.4 | | | 31.7 | | | |
| 부족율(%) | 78.6 | | 80.0 | | | 67.6 | | | 68.3 | | | |

註: 1) 이륜차와 현미경은 소요량을 지도원 1인 1台을 기준함.

2) 어촌지도선 소요량은 1지도소당 1척 기준이며, 조도계소요량은 1지도소당 3개 기준임.

3) 1986년 현재 어촌지도 공무원은 250명임.

자료: 국립수산진흥원, 지도과 제공, 1986.

III. 漁村指導活動의 内容과 方法

1. 漁村指導活動의 内容

國立水產振興院이 實施하고 있는 漁村指導事業의 活動 内容을 보면 크게 生產技術指導, 技術의 弘報活動, 漁民教育訓練의 3形態로 구성되어 있다. 生產技術指導는 28개 양식대상품목과 총 7,304個의 천해양식어업권 및 총 1,598건의 제1종 공동어업 등이 主對象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생산량과 소득증대에 대한 寄興度가 큰 양식품목을 對象으로 하는 「重點品目指導」가 核心을 이룬다.¹³⁾ 年度別 漁村指導事業의 중점지도대상 품목은 다음 <表 III-1>과 같은 변동을 보이고 있다.

<表 III-1> 漁村指導事業의 重點指導 對象品目의 變遷

| 지도내용 | 연도 | 1976 | 1977 | 1978 | 1979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
| 김 양 식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 피조개 "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 굴 "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 미 역 "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 다시마 " | B | B | B | B | B | B | B | B | B | C | |
| 새꼬막 " | C | B | B | B | B | B | B | B | B | B | |
| 우렁쉥이 " | C | B | B | B | A | A | A | A | A | A | |
| 백 합 " | B | B | C | C | C | C | C | C | C | C | |
| 전 복 " | C | B | B | B | A | A | A | A | A | A | |
| 천 초 " | C | B | B | B | B | B | B | B | B | B | |
| 홍 합 " | C | C | B | B | B | B | B | B | B | B | |
| 어류축양 " | C | C | C | C | C | C | C | C | C | A | |
| 계 | | 6종 | 10종 |

註 : A : 중점 지도대상 품목 B : 지도대상 품목 C : 비지도대상 품목

자료 : 국립수산진흥원, 연구보고, 1980, P.36.

국립수산진흥원, 어촌지도사업 보고서, 1981~1985 참조.

최정운, 천해양식어업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논집, Vol. 14 No. 2, 1985 참조.

生産技術指導는 이외에도 共同漁場의 增養殖指導·漁撈指導·加工指導 및 經營管理指導까지도 그 對象으로 하고 있다. 生產技術指導 가운데서一般的인 知識과 情報를 普及 및 指導하는 것을 一般指導라 하며, 展示漁場을 設置하여 거기에 技術과 財政을 우선적으로 集中시켜 모범적으로 運營함으로써 指導效果를 노리는 것을 漁村開發指導라 한다. 生產技術指導는 위에서 말한 指導活動의 漁場觀測活動이 포함되며, 그範圍와 比重이 가장 높은 漁村指導事業이다. 1976年 以前까지의 漁村指導活動은 水產技術誌의 發刊 및 配布와 漁民教育에 그쳤으나, 1976年 以後부터는 동년에 82名의 水產

13) 국립수산진흥원, 연구보고, 제24호, 1980, p.36.

漁村指導事業의 評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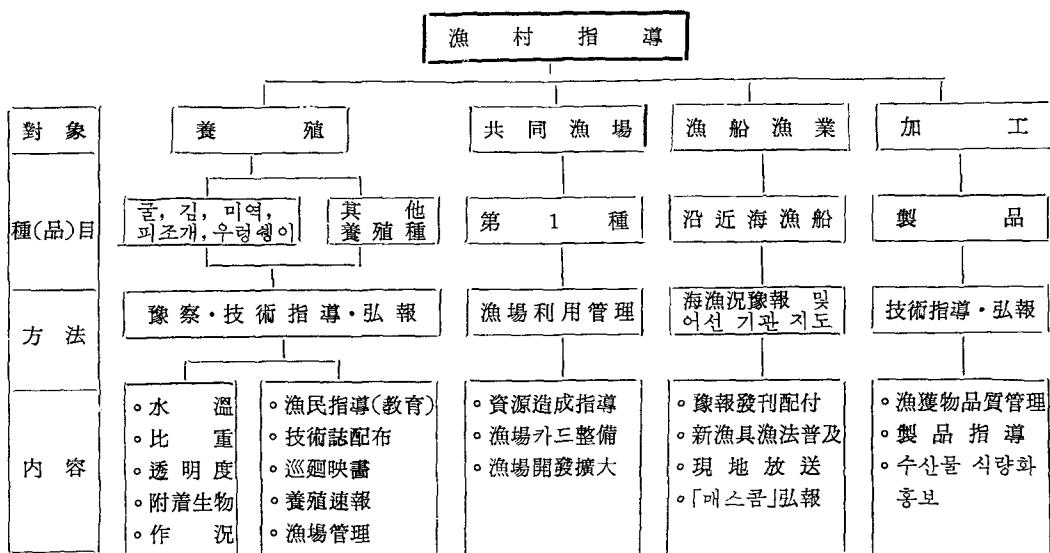
職公務員을 漁村指導 專担要員으로 活用하면서 主指導活動을 生產技術指導로 轉換시켰다.¹⁴⁾

특히 1981年 부터는 職制 改正으로 8個所의 漁村指導所를 設置하고, 여기에 指導裝備와 教材를 活用하여 水產資源의 効果的 利用管理를 圖謀하면서 不正漁業이 없는 健全한 營漁活動을 期하기 위한 “健全漁村育成指導”와 氣候條件과 各種 病害에 對備한 漁場豫察 및 主要 品目別 適期 技術指導를 强化하기 위한 “主產團地集中指導”, 등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技術普及活動을 展開해나가고 있다. 한편 技術弘報活動은 水產技術誌의 發刊, 海況 및 魚況에 관한 예보 발간, 중양식예보발간, 시청각교재 제작 및 대중매체를 통한 어촌과 漁家방송 편성 등을 주된活動으로 하는 漁村指導事業이다. 이 가운데 海況 및 魚況豫報의 發刊 및 配付는 연근해어업지도의 일환으로 수행되며, 중양식예보의 발간과 배부는 적지않고, 적조피해방지 등의 예방과 대책을 위해 持續的으로 수행해 나가는 중요한 指導活動의 하나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어촌지도소 산하에는 총 77개의 定地觀測地點을 設定하고 있으며, 指導員은 이 지점에서 每日 1回식 바다水溫, 比重, 透明度, 養殖物의 作況 等 6個 基本項目에 대해 관측하고, 그 결과를 報告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漁民教育活動은 營漁集體教育와 漁村巡回教育 및 어민계몽활동으로 나누어 실시해 나가고 있는데, 漁村指導所, 地域 水產研究所, 種苗培養場 등에서 주로 실시해 나가고 있으나 漁村契나 漁場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위의 3가지 형태의 指導內容 가운데서 가장 地重이 큰 것은 生產技術指導이며, 최근에는 이것을 健全漁村育成指導, 主產團地集中指導, 所得增大技術指導라는 次元에서 多角的으로 推進해 나가고 있다. 1981年부터는 여기에 漁民後繼者事業支援이 追加되었다.

위와 같은 漁村指導活動을 다시 指導對象別로 綜合하여 보면 〈表Ⅲ·2〉와 같이 體系化된다.

〈表Ⅲ·2〉

指 导 對 象 과 內 容 體 系



자료 : 국립수산진흥원, 1981년도 어촌지도 활동보고서, 1982, p.128 참조.

14) 국립수산진흥원, 연구보고 제24호, 1980, p.36~37.

수 산 경 영 론 집

이와 같은 指導活動을 통해서 漁村의 開發과 漁民의 所得增大를 가져오게 되는데, 특히 最近 1985年의 指導成果를 김과 우렁쉥이 養殖技術의 普及活動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III-3〉

主要品目에 대한 地域別 指導成果(1985)

| 地域 | | 경 기 도 지 역 | | | 전 라 북 도 지 역 | | |
|-------------------|-----------|-----------|--------|-------------|-------------|---------|--------|
| 養 殖 | | 1984 | 1985 | 증 감(%) | 1984 | 1985 | 증 감(%) |
| 김 양 시 식 | 건 수 (건) | 43 | 59 | 37 | 164 | 259 | 58 |
| | 어 장 (ha) | 580 | 735 | 27 | 2,290 | 3,776 | 65 |
| | 시 설 (책) | 9,421 | 14,726 | 56 | 54,000 | 71,400 | 32 |
| | 식 生 산(千속) | 543 | 900 | 66 | 2,320 | 5,712 | 246 |
| 地域 | | 강 원 도 지 역 | | 전 라 남 도 지 역 | | 경 북 지 역 | |
| 養 殖 | | 1984 | 1985 | 증감(%) | 1984 | 1985 | 증감(%) |
| 우 양 령 생 이 식 | 건 수 (건) | 19 | 38 | 100 | 22 | 36 | 64 |
| | 어 장 (ha) | 95 | 178 | 87 | 88 | 118 | 34 |

자료 : 국립수산진흥원, 漁村指導報告書, 1986, pp. 8-11.

〈表 III-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 전남 일원과 경남 일부지방에 한정되어 있었던 김양식 기술은 最近에 와서 급격한 速度로 北上 移動中에 있으며, 여기에 결정적인 役割을 한 것이 水產振興院의 地域試驗研究와 漁村指導公務員의 指導活動이다. 예를 들어 지난 1984年부터 1985年 사이에 경기도지방의 김양식은 어장건수 37%, 어장확대면적 27%, 시설량 56%로의擴大를 가져왔으며, 그結果 生產量은 543千 속에서 900千 속으로 66%가 增加되었다. 그리고 最近 새로운 收益性養殖品目으로서 漁民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우렁쉥이 양식은 '80年代初만 하여도 경남 충무지방 일원에서 극히 小數의 漁民에 의하여 試圖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경남은 물론, 경북, 강원 및 전남의 연안해역으로까지 그 기술이 확대 되었으며, 指導公務員들의 普及活動이 여기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로 되어 있다.

以外에도 漁村指導事業이 미친 영향력은 여러 側面에서 評價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漁村指導事業의 활동실적에 대한 評價나 活動內容에 대한 추세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表 III-4〉에서와 같이 事業名(活動內容)의 一貫性 없는 變更과 振興法, 豫算項目 등에 규정한 指導活動의 基本的인 内容에 벗어난 事業方向의 設定 등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비교분석과 올바른 評價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곤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도사업과 같은 活動結果를 評價하는 하나의 接近方法으

〈表 III-4〉

漁村指導事業의 內容變化

| 1980년까지 | | 1981년도 | 1982-1984 | 1985-1986 |
|---------|--------------------------------|---|-------------------------|--|
| 사 | ① 생산기술지도 ② 기술홍보지도 ③ 어민교육 | ② 전전어촌육성지도 ② 주산단지 집중지도 ③ 소득개발 기술지도 ④ 기술홍보 활동 | ① 무변동 ② " " " ④ " | ① 소득증대 기술지도 ② 후계자 사업지도 ③ 어민교육 ④ 기술홍보 활동 ⑤ 어촌지도의 효율성 제고 |
| 업 | | | | |
| 평 | | | | |

漁村指導事業의 評價

로서 프로그램분석법(method of programs analysis)¹⁵⁾과 같은 것이 매우 有效한 評價方法으로 採擇될 수 있으나 사업내용이 빈번한 變更을 가져올 때는 이와 같은 評價方法의 적용도 불가능하게 된다.

2. 漁村指導方法

指導方法이란 指導員이 被指導者에 대하여 指導目的이나 指導內容을 具現시키는 여러가지 方法을 말한다. 漁村指導는 指導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漁村指導公務員과 漁民間に 이루워지는 一種의 教授—學習의 과정이며, 漁民을 相對로 하는 漁村指導員의 意思傳達方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어떠한 教授方法, 어떠한 傳達方法을 擇하느냐에 따라서 指導效果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指導方法의 選擇과 效果의 指導方法의 開發問題는 漁村指導事業에 있어서 기본 내용을 구성하는 分野이다. 指導事業論에서는 指導事業의 經驗的事實과 實證的觀察을 통해 開發된 여러가지의 指導方法과 그 類型을 究明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結果 지금까지 導出된 諸指導方法과 이를 類型化하고 있는 代表의 研究結果를 소개하면 먼저 「비드필드」의 접촉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個人的方法과 集團的 method, 지도행위에 따라 구분하는 現地指導와 相談指導가 있으며, 相談指導는 다시直接相談과 通信相談으로 區分된다.¹⁶⁾ 다음은 朴 등이 提示하는 農村指導의 方法을 보면 접촉형태에 따라 個人접촉지도, 集團접촉지도, 大衆접촉지도와 지도매개체의 이용에 따라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과 展示지도 등이 있으며¹⁷⁾, 鞍田純은 이미 以前에 이와 유사한 分類방법을 시도한 바 있다.¹⁸⁾ 그의 直接지도와 間接지도로 대별하는 등 다른 例도 있으나 대체로 위에서 든 지도방법과 그 유형이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方法이다.

각 指導方法은 서로 장단점이 있으며, 또한 지도주체의 지도능력(예산, 인력, 조직 등)과 普及技術의 特性과 内容 및 體系, 그리고 指導客體의 知的水準, 人格的特性 및 受容態度 등에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指導方法에만 치중할 수는 없다. 그러나 效果와 信賴面에서는 個人的 접촉지도가, 波及効果面에서는 集團指導나 大衆指導가, 그리고 自進採用을 目的으로 하거나 指導人力의 不足, 被指導者の 水準向上 등의 目的下에서는 個人相談의 直接지도가, 그리고 권장지도 보다는先進漁民(advanced fisherman)이나 學習組織 또는 示範事業場(展示漁場) 등을 利用하는 方法指導가 바람직하다.

漁村指導는 漁村指導員이 漁民에게 必要한 水產技術이나 知識을 普及하고 傳達하며, 最終的으로는 漁民들의 態度를 變容시켜 革新事項의 採擇을 促進시키는 活動이므로 지금까지 吟味해온 指導一般의 諸方法은 다들 有用하며, 또한 實際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方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漁村指導事業에서 많이 採擇되고 있는 指導方法은 個人接觸指導라 볼 수 있으며, 有用한 學習組織의 未開發, 豫算上の 理由 등으로 集團指導나 展示指導 등은 널리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형便이다. 또한 個人接觸指導를 행하는데 있어서도 지도인력의 不足, 指導員의 현장경험미진 등의

15) 프로그램 분석법이란 사업효과 측정 방법의 하나이다. 성과개념이 기업의 수익성과 같이 명료한 사업이 아닌 사업의 활동성과를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주로 사업의 투입과정(input process)과 집행과정(operation process)의 분석이 중시되며, 성과는 제2의적인 문제가 된다.

16) FAO, op. cit., pp. 67~74.

17) 朴泰柱外, 신제 농촌지도론, 경문사, 1982, p. 211.

18) 鞍田純, 農業指導の理解と行動, 農山漁村文化協會, 1975, p. 148~149.

수 산 경 영 론 침

이유로 技術의 早期技術採用者나 先進漁民 혹은 中堅漁民을 주로 상대하는 간접적 개인접촉지도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지도인력의 不足現象을 補完하는데는 다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혁신기술의 漁村偏重化 現象을 초래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人力과 裝備의 補強, 指導員의 資質向上, 그리고 展示漁場設置의 擴大 등이 要請되는 바이다.

IV. 漁村指導事業의 與件分析

1. 普及技術의 内容

養殖漁業에 대한 漁村指導公務員의 品目別 主指導內容을 살펴보면 <表IV·1>과 같다.

이 表는 全國에 散在해 있는 36個 漁村指導所(全國 漁村指導所의 總數는 40個所)에 在職하고 있는 漁村指導公務員 250名을 對象으로 하여 調査한 品目別 指導內容의 度數 및 百分率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表IV·1>에서 品目別로 漁村指導公務員의 主指導 對象品目을 보면 군양식을 비롯하여 11個品目에 걸쳐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김양식이 15.87%로 가장 높고, 다음이 전복양식(14.01%), 우렁쉥이양식(11.96%), 어류축양(11.83%), 미역양식(10.66%), 기타 폐류양식(10.05%)의 順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26.62%는 위의 品目을 제외한 기타 양식업으로 구성된다. 單一品目으로는 김양식지도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어류축양지도도 重視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한편 구체적인 技術의 指導內容別 漁村指導公務員의 活動을 分析해 보면 양성지도가 22.7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이 종묘배양 및 채묘지도(21.75%), 시설지도(12.87%), 적지선정지도(12.60%), 채취지도(10.29%), 재해방제지도(10.24%), 경영지도(9.52%)의 順으로 되어 있다. 곧 지도내용이 技術에 限制치 않고 경영문제까지 포함하여 8개 사항에까지 걸쳐있다. 그리고 이러한 指導內容은 대상 品目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 品目에 걸쳐 종묘선택에서부터 경영지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도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養殖漁業의 경우 漁村指導公務員의 主指導活動이 特定指導分野에 치우치지 않고 全般的 側面에서 매우 多樣하게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立證해 주는 것이다.

다음에 各 品目別로 相對的인 主指導 내용을 살펴보면 군양식의 경우는 주로 채묘(23.18%)와 양성(19.38%)을 主指導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피조개양식은 양성(25.71%)과 채묘(24.00%), 전복양식은 양성(23.91%)과 적지선정(18.03%) 및 시설지도(14.80%)를 각각 主內容으로 하고 있다. 우렁쉥이양식은 양성(22.44%)과 채묘(14.44%), 김양식은 채묘(17.92%)와 양성(15.91%), 둛양식은 양성(25.79%)과 채취(18.25%) 및 시설지도(15.87%), 미역양식은 양성(20.70%)과 채묘(15.71%), 다시마양식은 양성(34.17%)과 채묘(14.17%), 기타조류양식은 양성(29.13%)과 적지선정(16.54%) 및 채취(14.96%)에, 그리고 어류축양은 양성(21.57%) 및 적지선정(15.06%)을 각각 主된 指導 내용으로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品目別 指導內容에 대한 相對度數가 갖는 의미는 <表IV·1>의 上欄에 제시된 8개 지도내용 가운데서 品目別 指導內容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意義가 있는 것이다. 이상의 分析結果에 의하면 비록 지도내용은 다양하고 복잡성을 떤다하더라도 지도공무원들의 主된 指導內容은 「적지선정—시설지도—채묘지도—양성지도—채취지도」의 5개 과정이라는 것과, 그 중에서도 「채묘—양성」의 분야에 더 力點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며, 요약해 보면 <表IV·2>와 같다.

漁村指導事業의 評價

〈表 N·1〉 漁村指導公務員의 品目別指導內容

| | | 品目別指導內容 | | | | | | | | | | (單位: 度數) | |
|--------------------------|-----------------------|------------------------|-------------------------|-------------------------|-------------------------|-------------------------|-------------------------|------------------------|---------------------------|------------------------|--|----------|--|
| 品 목 | 지 도 내 용 | 종 묘 선 력 | 채 료 | 양 성 | 적 자 선 정 | 채 취 | 채 해 방 제 | 시 설 지 도 | 경 영 지 도 | 합 계 | | | |
| 1. 군 부 | 양 식 | 11 (3.81) (3.04) | 67 (23.18) (14.69) | 56 (19.38) (6.55) | 25 (8.65) (5.27) | 28 (9.69) (7.24) | 35 (15.11) (9.09) | 35 (12.11) (7.23) | 32 (11.07) (8.94) | 289 (100.00) (7.68) | | | |
| 2. 괴조개 양식 | 6 (3.43) (1.66) | 42 (24.00) (9.21) | 45 (25.71) (5.26) | 20 (11.43) (4.22) | 14 (8.00) (3.62) | 10 (5.71) (2.60) | 21 (12.00) (4.34) | 17 (9.71) (4.75) | 175 (100.00) (4.65) | | | | |
| 3. 전 복 양 식 | 61 (11.57) (16.85) | 40 (7.59) (8.77) | 126 (23.91) (14.74) | 95 (18.03) (20.04) | 44 (8.35) (11.27) | 30 (5.69) (7.79) | 78 (14.80) (16.12) | 53 (10.06) (14.90) | 527 (100.00) (14.01) | | | | |
| 4. 우렁쉥이 양식 | 56 (12.44) (15.47) | 65 (14.44) (14.25) | 101 (22.44) (11.81) | 54 (12.00) (11.39) | 40 (8.89) (10.34) | 33 (7.33) (8.57) | 58 (12.89) (11.98) | 43 (9.56) (12.01) | 450 (100.00) (11.96) | | | | |
| 5. 기타폐류양식 | 27 (7.14) (7.46) | 22 (5.82) (4.82) | 110 (29.10) (12.87) | 53 (14.02) (11.18) | 45 (11.90) (11.63) | 34 (8.99) (8.83) | 48 (12.70) (9.92) | 39 (10.32) (10.89) | 378 (100.00) (10.05) | | | | |
| 6. 검 양 식 | 74 (12.40) (20.44) | 107 (17.92) (23.46) | 95 (15.91) (11.11) | 52 (8.71) (10.97) | 70 (11.73) (18.09) | 74 (12.40) (19.29) | 74 (12.40) (15.29) | 51 (8.54) (14.25) | 597 (100.00) (15.87) | | | | |
| 7. 토 양 식 | 21 (8.33) (5.80) | 13 (5.16) (2.85) | 65 (25.79) (7.60) | 36 (14.29) (7.59) | 46 (18.25) (11.89) | 14 (5.56) (3.64) | 40 (15.87) (8.26) | 17 (6.75) (4.75) | 252 (100.00) (6.70) | | | | |
| 8. 미 역 양 식 | 41 (10.22) (11.33) | 63 (15.71) (13.82) | 83 (20.70) (9.71) | 38 (9.48) (8.02) | 53 (13.22) (13.70) | 43 (10.72) (11.17) | 48 (11.97) (9.92) | 32 (7.98) (8.94) | 401 (100.00) (10.66) | | | | |
| 9. 다 시 마 양 식 | 7 (5.83) (1.93) | 17 (14.17) (3.73) | 41 (34.17) (4.80) | 13 (10.83) (2.74) | 12 (10.00) (3.10) | 10 (8.33) (2.60) | 12 (10.00) (2.48) | 8 (6.67) (2.23) | 120 (100.00) (3.19) | | | | |
| 10. 기타 조류양식 | 8 (6.30) (2.21) | 14 (11.02) (3.07) | 37 (29.13) (4.33) | 21 (16.54) (4.43) | 19 (14.96) (4.91) | 10 (7.87) (2.60) | 19 (7.87) (2.07) | 8 (6.30) (2.23) | 127 (100.00) (3.38) | | | | |
| 11. 어 류 죽 양 | 50 (11.24) (13.81) | 6 (1.35) (1.32) | 96 (21.57) (11.23) | 67 (15.06) (14.14) | 16 (3.60) (4.13) | 92 (20.67) (23.90) | 60 (13.48) (12.40) | 58 (13.03) (16.20) | 445 (100.00) (11.84) | | | | |
| 합 계 | | 362 (9.63) (100.00) | 456 (12.12) (100.00) | 855 (22.73) (100.00) | 474 (12.60) (100.00) | 387 (10.29) (100.00) | 484 (12.87) (100.00) | 358 (9.52) (100.00) | 3761 (100.00) (100.00) | | | | |

註: 1. 度數右側括弧內의 수자는 品目別 百分率.

수 산 경 영 론 집

〈表 IV·2〉

品目別 主要 指導內容의 比較

| 品目別 | 채 묘 양 성 적 지 선 경 채 취 시 설 지 도 |
|---------|--|
| 굴 | ○ → ○ |
| 피 조 개 | ○ ← → ○ |
| 전 복 | ○ → → ○ |
| 우 렁 생 이 | ○ ← → ○ |
| 김 양 식 | ○ → ○ |
| 톳 " | ○ → → ○ → ○ |
| 미 역 | ○ ← → ○ |
| 다 시 마 | ○ ← → ○ |
| 기 타 조 류 | ○ → → ○ → ○ |
| 어 류 축 양 | ○ → → ○ |

註 : 1) ○표는 品目別로 지도내용의 중요도를 표시함.

2) →표는 지도내용의 重要順序를 의미함(예 ; 굴양식은 채묘지도가 최우선이며, 다음이 양성지도임)

자료 : 表 IV-1에서 작성.

2. 指導活動과 關聯機關과의 接觸頻度

漁村指導公務員이 指導活動을 원활하게 遂行하기 위해서는 여러 關聯부서의 擔當者들과 接觸해야 하며, 기술적자문 또는 行政業務上 對面의 기회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機關 또는 組織은 여기서는 指導關聯機關으로 정의한다. 다음의 〈表IV·3〉은 漁村指導公務員이 지도활동을 위해서 관련기관의 擔當者를 對面하는 頻度를 期間別로 파악해 본 것이다.

〈表 IV·3〉

漁村指導 公務員의 期間別 對面回數

(單位 : 度數)

| 항목 | 기간 | 매 일 | 매 주 | 격 주 | 매 월 | 수 개 월 | 거의 없음 | 계 |
|----------------|-----------|-----------|----------|----------|----------|-----------|----------|---|
| 1. 수산연구소 연구관 | 19 (8.2) | 29(11.7) | 12 (5.2) | 62(26.8) | 86(37.2) | 25(10.8) | 234(100) | |
| 2. 군 수산과장 및 직원 | 7 (3.0) | 66(28.3) | 52(22.3) | 79(33.9) | 28(12.0) | 1 (0.4) | 243(100) | |
| 3. 수협임원 및 직원 | 60(25.6) | 101(43.2) | 30(12.8) | 32(13.7) | 8 (3.4) | 3 (1.3) | 234(100) | |
| 4. 읍·면장 및 직원 | 3 (1.3) | 53(23.0) | 31(13.5) | 71(30.9) | 53(23.0) | 19 (8.3) | 230(100) | |
| 5. 어촌계장 | 69(29.5) | 125(53.4) | 19 (8.1) | 20 (8.5) | 1 (0.4) | 0 (0.0) | 234(100) | |
| 6. 이장 | 19 (8.2) | 60(26.0) | 30(13.0) | 49(21.2) | 46(19.9) | 27(11.7) | 231(100) | |
| 7. 새마을청소년회 회장 | 6 (2.7) | 32(14.5) | 27(12.2) | 45(20.4) | 46(29.0) | 47(21.3) | 203(100) | |
| 8. 부녀회 회장 | 3 (1.4) | 12 (5.5) | 12 (5.5) | 40(18.3) | 45(20.5) | 107(48.9) | 219(100) | |
| 9. 어민후계자 | 115(48.9) | 98(41.7) | 11 (4.3) | 10 (0.0) | 0 (0.0) | 1 (0.4) | 235(100) | |

註 : 팔호내의 숫자는 항목별 배분율을 표시함.

漁村指導事業의 評價

따라서 <表IV·3>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漁村指導公務員의 접촉빈도가 가장 높은 사람은 어민후계자, 어촌계장, 수협¹⁹⁾의 임원 및 직원이며, 반대로 접촉빈도가 가장 낮은 사람은 부녀회 회장과 새마을 청소년회 회장으로 나타났다. 235명의 漁村指導公務員으로부터 청취한바에 의하면 어민후계자는 거의 매일 만나며(48.9%), 어촌계장과 수협임직원은 거의 매주 접촉하며 (53.4%, 43.2%), 어촌의 새마을 부녀회와 청소년회는 1년내내 거의 접촉기회가 없거나 한두번 정도對面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注目되는 것은 매우 빈번한 接觸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본 水產研究所 및 市郡水產課와의 接觸頻度는 그렇게 같은 편은 아니다. 한편 漁村指導公務員의 水協과 郡水產課와의 누적접촉빈도의 相對度數를 조사해보면 적어도 1주일에 한번이상 방문하는 相對度數는 水協이 68.8%인데 반하여, 군수산파는 31.3%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때 어민후계자나 어촌계장은 漁業에 從事하는 者이므로 技術指導對象者와 指導員이라는側面에서의 對面機會일 것으로보아 理解되나, 漁村指導公務員은 郡水產課 보다는 오히려 水協과 더 긴밀한 關係를 형성하고 있는 점이다.

3. 漁村指導 與件分析

여기서는 漁村指導公務員이 漁村指導事業을 遂行하는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基本的 要件이 무엇인가를 調查하고, 이를 조사對象者別로 區分하여 그 差異를 分析・考察하기로 한다.

<表IV·4>는 現在 指導事業을 주관하고 있는 漁村指導公務員의 特性, 有關機關과 漁民의 어촌지도 사업에 대한 관심도 및 協調狀況 등에 관해 漁村指導所에 在職하고 있는 漁村指導公務員 250名과 漁

<表 IV·4> 指導事業遂行與件 (單位: 度數)

| 항 목 | 빈도 조사대상자 | 指導事業遂行與件 | | | | | | 계 |
|------------------|-------------|-----------|----------|-----------|-----------|----------|----------|---|
| | | 매우부족 | 조금부족 | 보통 | 양호 | 매우양호 | | |
| ①관내 수 산업에 대 한 지식 | 어촌지도 공무원 | 6 (2.5) | 15 (6.4) | 49(20.8) | 121(51.3) | 45(19.1) | 236(100) | |
| | 어민 | 27(15.8) | 35(20.5) | 73(41.7) | 29(17.0) | 7 (4.1) | 171(100) | |
| | 어민 후계자 | 17 (9.9) | 31(18.0) | 62(36.0) | 56(32.6) | 6 (3.5) | 172(100) | |
| | 수산공무원·수협직원 | 14 (6.5) | 26(12.1) | 97(41.5) | 72(33.5) | 6 (2.8) | 215(100) | |
| ②어촌지도 공무원의 자질 | 어촌지도 공무원 | 2 (0.8) | 8 (3.4) | 62(26.1) | 133(56.4) | 31(13.1) | 236(100) | |
| | 어민 | 18(10.7) | 17(10.1) | 62(36.9) | 62(36.9) | 9 (5.4) | 168(100) | |
| | 어민 후계자 | 5 (2.9) | 18(10.6) | 57(33.5) | 79(46.5) | 11 (6.5) | 170(100) | |
| | 수산공무원·수협직원 | 4 (1.9) | 19 (8.8) | 103(47.7) | 85(39.4) | 5 (2.3) | 216(100) | |
| ③어촌지도 공무원의 열성 | 어촌지도 공무원 | 2 (0.9) | 8 (3.4) | 60(25.8) | 108(46.4) | 55(23.6) | 233(100) | |
| | 어민 | 21(12.8) | 15 (9.1) | 55(33.5) | 61(37.2) | 12 (7.3) | 164(100) | |
| | 어민 후계자 | 4 (2.4) | 16 (9.4) | 48(28.2) | 66(38.8) | 36(21.2) | 170(100) | |
| | 수산공무원·수협직원 | 2 (0.9) | 31(14.4) | 83(38.4) | 87(40.3) | 13 (6.0) | 216(100) | |
| ④어촌지도 공무원의 장비 | 어촌지도 공무원 | 159(67.4) | 63(26.7) | 12 (5.1) | 1 (0.4) | 1 (0.4) | 236(100) | |
| | 어민 | 65(39.9) | 48(29.4) | 38(23.3) | 11 (6.7) | 1 (0.6) | 163(100) | |
| | 어민 후계자 | 72(43.1) | 47(28.1) | 37(22.2) | 11 (6.6) | 0 (0.0) | 167(100) | |
| | 수산공무원·수협직원 | 132(62.3) | 54(25.0) | 25(11.6) | 5 (2.3) | 0 (0.0) | 216(100) | |
| ⑤어촌지도 소의 시 범어장 | 어촌지도 공무원 | 139(62.3) | 34(15.2) | 41(18.4) | 9 (4.0) | 0 (0.0) | 223(100) | |
| | 어민 | 80(52.6) | 33(21.7) | 25(16.4) | 12 (7.9) | 2 (1.3) | 152(100) | |
| | 어민 후계자 | 96(60.0) | 25(15.6) | 30(18.8) | 8 (5.0) | 1 (0.6) | 165(100) | |
| | 수산공무원·수협직원 | 156(77.2) | 26(12.9) | 16 (7.9) | 4 (2.0) | 0 (0.0) | 202(100) | |

19) 여기서 水協이란 地區別 水協을 가리킨다.

수 산 경 영 톤 집

| | | | | | | | |
|------------------------|---------------|-----------|-----------|-----------|----------|----------|----------|
| ⑥ 어촌지도 공무원의 여비 | 어 촌 지 도 공 무 원 | 181(76.4) | 53(22.4) | 3 (1.3) | 0 (0.0) | 0 (0.0) | 237(100) |
| | 어 민 | 46(32.9) | 42(30.0) | 45(32.1) | 6 (4.3) | 1 (0.7) | 140(100) |
| | 어 민 후 계 자 | 64(44.8) | 42(29.4) | 32(22.4) | 2 (1.4) | 3 (2.1) | 143(100) |
| | 수산공무원·수협직원 | 130(63.4) | 47(22.9) | 25(12.2) | 2 (1.0) | 1 (0.5) | 205(100) |
| ⑦ 어촌지도 공무원의 사기 | 어 촌 지 도 공 무 원 | 110(46.4) | 51(21.5) | 68(28.7) | 7 (3.0) | 1 (0.4) | 237(100) |
| | 어 민 | 23(14.5) | 28(17.6) | 74(46.5) | 30(18.9) | 4 (2.5) | 159(100) |
| | 어 민 후 계 자 | 23(14.0) | 28(17.1) | 70(42.7) | 34(20.7) | 9 (5.5) | 164(100) |
| | 수산공무원·수협직원 | 54(25.0) | 60(27.8) | 87(40.3) | 15 (6.9) | 0 (0.0) | 216(100) |
| ⑧ 어촌지도 공무원의 인원 | 어 촌 지 도 공 무 원 | 86(36.3) | 113(47.7) | 28(11.8) | 7 (3.0) | 3 (1.3) | 237(100) |
| | 어 민 | 50(31.8) | 54(34.4) | 41(26.1) | 11 (7.0) | 1 (0.6) | 156(100) |
| | 어 민 후 계 자 | 42(25.0) | 65(38.7) | 41(24.4) | 15 (8.9) | 5 (3.0) | 168(100) |
| | 수산공무원·수협직원 | 82(37.8) | 85(39.2) | 32(14.7) | 15 (6.9) | 3 (1.4) | 217(100) |
| ⑨ 유관기관 의 협조 및 지원 | 어 촌 지 도 공 무 원 | 37(15.6) | 63(26.6) | 93(39.2) | 40(16.9) | 4 (1.7) | 237(100) |
| | 어 민 | 41(25.6) | 39(24.4) | 43(29.8) | 33(20.6) | 4 (2.5) | 160(100) |
| | 어 민 후 계 자 | 52(31.1) | 36(21.6) | 60(35.9) | 15 (9.0) | 4 (2.4) | 167(100) |
| | 수산공무원·수협직원 | 37(17.1) | 66(30.4) | 88(40.6) | 22(10.1) | 4 (1.8) | 217(100) |
| ⑩ 어민의 관심과 협조 | 어 촌 지 도 공 무 원 | 12 (5.1) | 37(15.7) | 100(42.4) | 75(31.8) | 12 (5.1) | 236(100) |
| | 어 민 | 29(17.2) | 28(16.6) | 76(45.0) | 25(14.8) | 11 (6.5) | 169(100) |
| | 어 민 후 계 자 | 28(16.2) | 34(19.7) | 64(37.0) | 32(17.9) | 16 (9.2) | 173(100) |
| | 수산공무원·수협직원 | 27(12.4) | 57(26.3) | 101(46.5) | 32(14.3) | 1 (0.5) | 217(100) |

註 : () 내의 숫자는 조사대상자별 빈도의 백분율임.

民 350名(일반어민 175名, 그리고 漁民後繼者 175名) 및 水產公務員과 水協任職員을 합친 水產關係公務員 274名²⁰⁾으로부터 각각 파악된 設問調查의 結果이다. 無應答設問紙는 集計過程에서 除外시켰다.

아래에 〈表IV·4〉를 중심으로 漁村指導公務員의 指導事業遂行을 위한 興件을 主要項目別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1) 漁村指導公務員의 管內 水產業 知識

漁村指導公務員의 自己評價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충분한 知識(보통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漁民들과 水產公務員 및 水協職員은 어촌지도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管內水產事情에 대한 지식수준을 보통정도 이상으로는 평가하고 있지 않다. 특히 一般漁民의 경우 36.3%가 否定的인 見解를 나타내고 있다. 만일에 이것이 지도원에 대한 客觀的인 評價라고 한다면²¹⁾ 어촌지도공무원은 管內水產事情에 대해 技術的 知識은 물론, 漁村自體의 社會·經濟·文化的인 評價에 대해서도 꼭넓은 이해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漁村指導務員의 資質

여기서 어촌지도공무원의 資質이란 主로 기술적 자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두고자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調查對象者は 어촌지도공무원의 자질에 대해서는 대체로肯定的인 評價를 내리고 있으나, 여기에서도 일반漁民의 경우는 20.8%라는 가장 높은 수치로서 否定的 反應을 표시하고 있다.

20) 水產關係公務員의 內譯은 市·郡水產關係公務員(70명), 地區別水協任職員(140명), 水產廳公務員(20명), 水協中央會職員(20명), 水產振興院 산하 公務員(2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21) 일반어민을 除外하면 다른 조사대상은 같은 公務員이라고 하는 입장, 또는 유기적인 접촉을 통한 인간 관계의 형성이 가능한 계층(후계자)이라 할 수 있다.

漁村指導事業의 評價

이에 반하여 漁村指導公務員 자신들의 自己評價에 의하면 4.2%만이 자신들의 資質에 不足한 점이 있다는 것을 示認할 뿐 나머지 95.8%라는 대다수 어촌지도공무원들은 이를 否定하고 있다. 곤 자신들의 자질은 보통 이상의 수준에 달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3) 漁村指導公務員의 热誠度

漁村指導公務員의 資質과 마찬가지로 調查對象者는 漁村指導公務員의 热性에 대해서 대부분이肯定的인 熊度를 取하고 있다. 대체로 漁村指導公務員에 대해 否定的인 熊度를 갖는 一船漁民들도 이점에 대해서만은 솔직히 시인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理在의 漁村指導公務員들은 現地漁村에서自身들의 職務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指導員全員이 热과 誠을 갖고 지도업무에 充實히 임하고 있다는 점에 一致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4) 漁村指導裝備

漁村指導裝備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고찰한바 있으나 設問을 통해서도 漁村指導公務員 자신은 물론, 다른 모든 應答者の 대부분이 指導裝備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一般漁民과 漁民後繼者들은 漁村指導公務員이나 水產公務員 또는 水協任職員들에 비해 指導裝備의 부족 현실을 상대적으로 덜 實感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난다. 아마 이것은 漁村指導를 위한 裝備의 内容 및 이의 重要性에 대한 知識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5) 漁村指導所의 示範漁場

調査村象者別로 약간의 差異는 있으나 대부분의 廵答者は 示範漁場이 매우不足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示範漁場이 갖는 意味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새로운 연구결과의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확인시키고, 믿기 힘으로써 지도의 파급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展示漁場으로서의 시범어장이며, 다른 하나는 지도원들의 연구와 교육 및 경험대상으로서의 示範漁場이다. 漁村指導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内包한 시범어장으로서 重視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 이를 擴大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²²⁾.

6) 指導公務員의 旅費

모든 調査村象者는 대체적으로 漁村指導公務員의 旅費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調査對象者別로 보면 漁村指導公務員의 98.8%, 一般漁民의 62.9%, 漁民後繼者의 74.2%, 水產公務員과 水協任職員의 86.3%가 다같이 어촌지도 공무원의 旅費부족을 실감하는 것으로 廢答하고 있다. 어촌지도공무원은 관계규정에 의해 다른 수산직공무원에게는 支拂되지 않는 月定旅費 3萬원²³⁾이 每月 支拂되고 있다. 이는 適當平均 4~5日을 漁村現場에서 活動해야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適正

22) 漁村指導에서 示範漁場活用이 불충분한 이유는

① 예산부족 ② 관리실패에 대한 책임의 귀속 ③ 어장법규상의 제한 등을 들 수 있으나 ①과 ②의 요인에 지배되는 면이 크며, 보다 중요한 것은 ③의 요인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험연구의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23) 1987년부터는 1人當 4萬원이 支給되게 되어 있다.

수 산 경 영 론 집

한가의 與否는 정확히 말할 수 없으나 다만 内勤日數에 비해 外勤日數가 많고, 月平均 5~8일을 漁村地域에서 宿食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어촌의 도로교통 사정으로 大衆교통수단의 利用이 쉽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月定旅費 3만원에 대한 現實性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다.

7) 指導公務員의 士氣

漁村指導公務員의 67.9%가 자신들의 士氣의 水準이 낮다고 應答한데 반하여, 일반漁民이나 漁民後繼者는 각각 32.1%와 31.%만이 漁村指導公務員의 士氣가 낮다고 보고 있다. 즉 漁民들이 보는 어촌지도공무원의 士氣水準은 높은편에 속한다. 그러나 水產公務員 및 水協任職員들은 대부분이 그 수준을 보통水準 以下라고 評價하고 있어 漁民들과는 다소 對立된 見解이며, 지도공무원과는 저의 같은 見解을 보인다. 漁民들의 생각은 漁村指導公務員이라고 하여 特別히 士氣가 낮을 이유가 없을 것이며, 特別한 公務員을 除外하면 公務員은 다들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공무원자신들도 자신들의 職務에 대한 올바른 認識과 態度의 整立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行政的 權限이 있는 公務員과 그렇지 않는 公務員과의 士氣水準에 대한 差異라 보아질 때 士氣平準化를 위한 조치에 대해 多角的인 겸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8) 漁村指導公務員의 數

漁村指導公務員의 數에 있어서는 4個의 調查對象者 階層이 모두 비슷한 應答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漁村指導公務員자신들은 전체의 89%가, 그리고 水產公務員과 水協任職員들은 전체의 77%가 指導人力의 不足현상을 느끼고 있으며, 漁民과 漁民後繼者는 이보다 약간 낮은 66.2%와 63.7%가 不足하다고 應答하고 있다. 따라서 漁村指導人力의 絶對數가 不足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是認하고 있으며, 一致된 見解를 나타낸다.

9) 有關機關의 協助 및 支援

앞에서 본 <表IV-3>의 關聯機關과의 接觸頻度分析은 相互關聯關係를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관내 漁業發展과 漁民生活의 向上을 위해 機能하는 漁村指導所에 대해 다른 水產關係機關이 얼마나 호의적인 態度를 보이느냐에 대한 것을 보기로 하였다. 調查結果에 의하면 4個의 調查對象階層이 비슷한 應答樣相을 보여주고 있으나 共通點은 4個의 階層 모두가 漁村指導所에 대해 유관기관의 協助 및 支援관계는 充分치 못하다는 方向으로 그 分布가 치우쳐 있다.

10) 漁民의 關心과 協助

漁村指導活動에 대해 漁民들 자신이 關心 없는 태도를 보이거나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 指導效率의 低下는 물론, 지도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自明하다. 이 점에서 지도사업에 대한 漁民의 關心의 向方을 알아보면 어촌지도공무원들은 그 水準이 보통정도의 水準보다 약간 良好한 것으로 보고있으나, 水產公務員・水協任職員의 경우는 보통 水準보다 약간 부족한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일반漁民과 漁民後繼者는 보통 水準을 中心으로 좌우 대칭인 分布形態를 나타내고 있다. 곧 中立的 입장에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漁村의 指導事業을 위한 與件을 10個 項目에 걸쳐 하나하나 檢討하여 보았다. 종합해서

漁村指導事業의 評價

말한다면 어촌지도공무원들이 갖는 管內水產業에 대한 知識水準이나 漁村指導員의 資質 및 热性은 대체적으로 良好한 편이라고 볼 수 있으나 漁村指導公務員들이 갖는 裝備, 旅費 및 土氣水準과 指導所의 示範漁場 및 有關機關의 協助 등을 상대적으로 不足하거나 또는 不良하다고 볼 수 있다.

V. 漁村指導事業의 活動評價

1. 指導活動에 대한 一次元 分析

漁村指導事業의 計劃과 實積과의 關係를 分析하여 指導事業이 기대하는 目標水準을 어느 정도로 達成하였으며, 實質的인 指導成果를 얼마나 거두었는가를 確認·測定하는 과정을 指導事業의 評價라 한다. 이러한 評價는 指導에 대한 問題點의 所在와 計劃의 指導의 遂行 與否를 分析·診斷함으로써 그 結果를 次期의 指導活動에 反映하는데 目的이 있다. 그러므로 指導事業에 대한 評價作業에는 면밀한 비교검토가 이루워져야하며, 指導事業의 궁극적 목적과 그의 事業의 特殊性을 充分히 반영할 수 있는 評價方法을 使用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指導活動에 의해 漁民의 技術이 어느 정도로 向上되었으며, 그 結果 所得水準이 어떻게 變化하고, 漁家經營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또한 水產業發展과 地域經濟의 開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가에 대한 漁民 및 當該產業全般을 포함한 經濟的 效果를 상세히 評價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理想的인 評價方法이 될 것이다.

그러나 漁民의 經濟的 效果는 指導要因 이외에도 自然的 要因(氣候, 海況, 漁場條件, 資源의 動向, 立地條件 등)과 經濟的 要因(漁業形態와 經營規模의 변화 労動力水準, 經營方法의 개선, 價格 및 市場條件, 水產關聯施設 등) 및 社會的 要因(關係法規, 水產振興團體나 각종 組織의 活動 등) 등 여러 條件에 지배되므로 일정기간의 漁民經濟效果가 반드시 지도활동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效果의 一部를 지도사업에 의한 결과로서 適出하는 것도 불가능하다.²⁴⁾ 요컨데 가장 이상적인 평가방법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適합한 평가적 접근을 시도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漁民, 漁民後繼者, 水產公務員, 水協職員, 水產研究所研究官 등을 對象으로 한 設問調查의 結果를 토대로하여 이를 評價하고 分析하는 行動科學的 접근에 의한 認知的 評價方法에 의존하기로 한다. 곧 指導施行者와 愛惠者集團 및 有關機關이 내리는 評價와 認識의 결과를 가지고 그동안의 어촌지도사업의 효과를 평가해 보고자하는 것이다.

1) 漁村指導公務員의 活動狀況

<表IV·4>에서 漁村指導公務員의 热誠度를 評價·分析한바 있으나同一한 對象이지만 여기서는 評價問項을 달리하여 活動狀況을 평가하고자 한다.

漁村指導公務員의 活動狀況을 調查對象者別로 살펴보면 <表V·1>과 같다.

24) 이점에서 鄭 등은 事業의 效果測定을 함께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歷史와 成熟의 영향을 어떻게 排除하고 統制하느냐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로서 實感나게 표현하고 있다. 「어떤 事業의 效果라고 测定한 것이 사실은 그 사업의 효과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다른 요인 또는 사건(events)에 의한 效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곤란하다.
(鄭址雄外, 農村地域社會開發事業의 効果와 發展方案,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수 산 경 영 론 집

<表 V·1> 調査對象別 漁村指導 公務員의 活動 評價 (單位: 度數; %)

| 조사대상자 | 활동 | 항상 열심 | 비교적 열심 | 보통 | 약간 부족 | 매우 부족 | 계 |
|------------|----|-----------|-----------|-----------|----------|----------|------------|
| | | 항상 열심 | 비교적 열심 | 보통 | 약간 부족 | 매우 부족 | |
| 지방수산공무원 | | 6(10.2) | 25(42.4) | 12(20.3) | 15(25.4) | 1 (1.7) | 59(100.0) |
| 수산청 공무원 | | 4(20.0) | 14(70.0) | 2(10.0) | 0 (0.0) | 0 (0.0) | 20(100.0) |
| 지구별 수협 임직원 | | 24(22.9) | 37(35.2) | 24(22.9) | 14(13.3) | 6 (5.7) | 105(100.0) |
| 수협중앙회 임직원 | | 1 (6.3) | 6(37.5) | 4(25.0) | 5(31.3) | 0 (0.0) | 16(100.0) |
| 진흥원연구관 | | 2(11.8) | 13(76.5) | 2(11.8) | 0 (0.0) | 0 (0.0) | 17(100.0) |
| 소 계 | | 37(17.1) | 95(43.8) | 44(20.3) | 34(15.7) | 7 (3.2) | 217(100.0) |
| 일반 어민 | | 35(20.0) | 55(31.4) | 29(16.6) | 35(20.0) | 21(12.0) | 175(100.0) |
| 어민후계자 | | 53(25.3) | 65(34.5) | 30(17.0) | 23(16.7) | 2 (6.6) | 173(100.0) |
| 소 계 | | 88(25.3) | 120(34.5) | 59(17.0) | 58(16.7) | 23 (6.6) | 348(100.0) |
| 계 | | 125(22.1) | 215(38.1) | 103(18.2) | 92(16.3) | 30 (5.3) | 565(100.0) |

먼저 漁村指導公務員의 活動에 대한 個人評價內容부터 살펴보면 一般漁民과 水協中央會의 任職員 및 地方水產公務員을 除外한 다른 階屬은 漁村指導公務員의 活動을 비교적 높이 評價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漁村指導公務員의 指導를 받고 있는 受惠階層(漁民 및 漁民後繼者)과 有關機關간에는 評價水準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一般漁民들은 平均 68.0%가 漁村指導公務員의 活動이 보통 이상이라고 應答하고 있는 반면에, 指導業務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階層(地方水產公務員, 水產廳公務員, 地區水協 任職員, 水協中央會 任職員 및 振興院 研究官)에서는 81.2%가 보통 이상이라고 應答하고 있다. 한편 一般漁民과 漁民後繼者로 나누어 이에 대한 反應度를 비교해 보면 一般漁民의 경우는 68.0%, 漁民後繼者의 경우는 76.8%가 漁村指導公務員의 活動이 보통以上이라고 應答하고 있다. 이와같은 應答比率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現行의 漁村指導業務는 一般漁民에 있어서 보다는 漁民後繼者 中心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調查對象者 全體는 22.1%가 指導公務員의 活動을 항상 열성적이라고 應答했으며, 38.1%는 비교적 열심히 活動하며, 그리고, 18.2%는 보통정도라고 評價하고 있다.

<表 V·2>는 一船漁民 및 漁民後繼者를 經歷別로 나누어서 漁村指導公務員의 活動에 대한 評價水準에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보기위해 集計된 것이다.

<表 V·2> 經歷別 漁村指導 公務員의 活動評價 (單位: 度數, %)

| 경력 | 활동 | 항상열심 | 비교적열심 | 보통 | 약간 부족 | 매우 부족 | 계 |
|--------|----|----------|-----------|----------|----------|----------|------------|
| | | 항상열심 | 비교적열심 | 보통 | 약간 부족 | 매우 부족 | |
| 5년 이하 | | 15(25.4) | 23(33.0) | 8(13.6) | 9(15.3) | 4 (6.8) | 59(100.0) |
| 6—10년 | | 26(22.4) | 44(37.9) | 21(18.1) | 20(17.2) | 5 (4.3) | 116(100.0) |
| 11—15년 | | 27(30.0) | 28(31.0) | 18(20.0) | 13(14.4) | 4 (4.4) | 90(100.0) |
| 16—20년 | | 13(28.3) | 16(34.8) | 7(15.2) | 4 (8.7) | 6(13.0) | 46(100.0) |
| 21—25년 | | 3(16.7) | 5(27.8) | 3(16.7) | 5(27.8) | 2(11.1) | 18(100.0) |
| 26년이상 | | 4(21.1) | 4(21.1) | 2(10.5) | 7(36.8) | 2(10.5) | 19(100.0) |
| 계 | | 88(25.3) | 120(34.5) | 59(16.9) | 58(16.7) | 23 (6.6) | 348(100.0) |

漁村指導事業의 評價

漁業經歷이 20年以下の 階層에서는 約 80%라는 높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 反面에, 21~25年の漁業經歷을 가진 漁民階層에서는 61.2%가 肯正的評價를 하며, 26年이상의 계층에서는 이것이 57.7%로서 약간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漁業經歷이 높을수록 漁村指導公務員의 活動과 役割에 대한 신뢰감이 감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漁村指導公務員들의 활동은 漁業經歷이 높은 漁民들로부터는 크게 信頼感을 얻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의 階層으로부터는 어느정도 認定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사한 現象이 다른 연구의 結果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²⁵⁾ 漁業經歷과 新技術에 대한 受容努力과의 사이에는 逆關係가 성립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젊은 漁村指導公務員의 知識이나 技術을 무시하는 어민들의 관행적 어업타성이라고 하는 人格的特性이 그와 같은 原因을 결파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實證的考察을 要한다.

2) 指導活動과 漁民所得

<表 V·3>에 의하면 調査對象者중에서 直接的인 指導를 받고 있는 階層(一般漁民과 漁民後繼者)보다는 간접적으로 指導를 하거나 받고 있는 有關機關의 漁村指導公務員의 指導活動이 漁民의 所得增大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應答하고 있다.

<表 V·3> 所得增大의 寄與度 (單位: 度數, %)

| 조사대상자 기여정도 | 매우크다 | 크다 | 보통 | 작다 | D.K. | 계 |
|---------------|-----------|-----------|----------|----------|---------|----------|
| 지방 수산 공무원 | 20(33.9) | 28(47.5) | 5(8.5) | 5(8.5) | 1(1.7) | 59(100) |
| 수산청 공무원 | 8(42.1) | 11(57.9) | 0(0.0) | 0(0.0) | 0(0.0) | 19(100) |
| 지방 수협 임직원 | 25(23.8) | 64(61.0) | 6(5.7) | 10(9.5) | 0(0.0) | 105(100) |
| 수협중앙회 임직원 | 2(12.5) | 10(62.5) | 3(18.8) | 1(6.3) | 0(0.0) | 16(100) |
| 진흥원 연구관 | 7(41.2) | 10(58.8) | 0(0.0) | 0(0.0) | 0(0.0) | 17(100) |
| 소계 | 62(28.7) | 123(56.9) | 14(6.5) | 16(7.4) | 1(0.5) | 216(100) |
| 어민 | 39(22.3) | 66(37.7) | 23(13.1) | 41(23.4) | 6(3.4) | 175(100) |
| 어민후계자 | 56(32.0) | 72(41.1) | 18(10.3) | 25(14.3) | 4(2.3) | 175(100) |
| 소계 | 95(27.1) | 138(39.4) | 41(11.7) | 66(18.9) | 10(2.9) | 350(100) |
| 계 | 157(27.7) | 261(46.1) | 55(9.7) | 82(14.5) | 11(2.0) | 566(100) |

註: 1) ()내의 숫자는 기여정도별 百分比 임. 2) D.K는 무응답자 임.

특히 水產廳公務員과 振興院研究官은 漁村指導公務員이 행한 指導活動이 漁民들의 所得增大에 이바지한 면이 커다고 하는 것을 다른 조사 대상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3) 漁村指導公務員에 의한 技術普及度

<表 V·4>는 漁村指導公務員의 技術의 普及度를 一般漁民과 漁民後繼者로 區分하여 分析한 것이다.

25) 崔正鉉, 전개논문, pp. 50~51 참조.

수 산 경 영 톤 침

〈表 V·4〉

漁村指導 公務員에 의한 技術의 普及度

(單位: 度數)

| 조사대상 보급도 | | | | | | | 계 |
|-------------|----------|-----------|----------|----------|----------|------------|---|
| | 매 우 크다 | 크 다 | 보 통 이 다 | 별로 없 다 | 전 혀 없 다 | | |
| 1. 어 민 | 16 (9.2) | 51(29.3) | 24(13.8) | 44(25.3) | 39(22.4) | 174(100.0) | |
| 2. 어민후계자 | 27(15.5) | 89(51.1) | 24(13.8) | 22(12.6) | 12 (6.9) | 174(100.0) | |
| 계 | 43(12.4) | 140(40.2) | 48(13.8) | 66(19.0) | 51(14.7) | 348(100.0) | |

註: ()내의 숫자는 기술의 普及度에 대한 百分率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調查對象 어민의 52.6%는 漁村指導公務員으로 부터 技術的 도움을 받고 있다고 應答하고 있으나, 나머지 47.4%의 漁民들은 이 사실을 否定하고 있다. 또한 〈表 V·4〉에 의하면 一般漁民보다는 後繼者漁民들이 더 많은 技術的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現在 漁村指導員의 技術普及活動이 漁民後繼者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漁業을 事業化시키고자 하는 漁民後繼者들의 新技術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에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分析한 〈表 V·4〉의 技術普及度가 調查對象者에 따라 差異를 갖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檢定을 한 바에 의하면 그 결과는 有意水準 0.01로서 高度의 有意性을 나타내고 있음이 判明되었다. 즉 一般漁民과 後繼者漁民 사이에는 技術의 普及度에 대한 인식상 差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後繼者事業의 확대는 水產業의 未來的 발전과 漁村地域 經濟發展의 活力素役割을 할 수 있는 適切한 하나의 對策이 될 수 있는 것이다.

〈表 V·5〉는 漁民과 漁民後繼者를 다시 從事漁業 類型別로 細分하고, 從事漁業의 種類에 따라서 나타나는 漁村指導公務員들의 技術普及 程度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漁村指導公務員에 의한 近代的 水產技術의 擴散效果에 대하여 一般漁民의 경우 養殖漁業從事者는 45.3%, 漁船漁業從事者는 29.5%, 그리고 複合漁業 從事者는 40.0% 정도가 肯定的 평가를 내리는데 대하여, 後繼者漁民들의 긍정적 평가수준은 養殖漁業 從事者는 71.2%, 漁船漁業從事者는 63.4%, 그리고 複合漁業從事者는 71.4%라는 높은 분포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漁村指導公務員의 存在와 그들의 技術普及活動은 같은 어민인데도 不拘하고 일반어민과 어민 후계자와의 사이에는 각각 다르게 비치고 있다는 뜻인데, 非漁民後繼者들의 소외의식을 어떻게 回復

〈表 V·5〉

漁業別 調査對象者の 指導公務員에 대한 技術普及度評價

(單位: 度數, %)

| 계 총 보급도 | 업종별 | | | | | | 계 |
|------------|-------|----------|-----------|----------|----------|----------|------------|
| | | 매우 크다 | 크다 | 보통이다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
| 일반어민 | 양식 어업 | 10(11.6) | 29(33.7) | 10(11.6) | 16(18.6) | 21(24.4) | 86(100.0) |
| | 어선 어업 | 5 (7.4) | 15(22.1) | 10(14.7) | 22(32.4) | 16(23.5) | 68(100.0) |
| | 복합 어업 | 1 (5.0) | 7(35.0) | 4(20.0) | 6(30.0) | 2(10.0) | 20(100.0) |
| 어민 계자후 | 양식 어업 | 9(15.3) | 33(55.9) | 7(11.9) | 7(11.9) | 3 (5.1) | 59(100.0) |
| | 어선 어업 | 15(14.9) | 49(48.5) | 15(14.9) | 14(13.9) | 8 (7.9) | 101(100.0) |
| | 복합 어업 | 3(21.4) | 7(50.0) | 2(14.3) | 1 (7.1) | 1 (7.1) | 14(100.0) |
| 계 | | 43(12.4) | 140(40.2) | 48(13.8) | 66(19.0) | 51(14.7) | 348(100.0) |

註: $\chi^2 = 46.162$, d.f. = 20.

漁村指導事業의 評價

하느냐가 指導事業의 重要한 課題라 생각되며, 특히 漁業가운데서도 漁船漁業에 대한 指導對策과 技術普及活動을 어떻게 구체화 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4) 漁業技術 變化에 대한 漁民의 意識

〈表 V·6〉은 水產技術의 變化에 대한 漁民들의 意識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일반어민과 어민후계자간에 이문제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兩階層으로 區分해 보았다.

이것은 어떠한 階屬이 水產技術의 變化나 革新事項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는가에 따라 傳統的 既存技術의 限界나 改善點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즉시 보다 빠른 技術的 適應을 위해 새로 운 수산기술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關心誘發者(concerned inductors) 내지는, 變化擔當者로 登場하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이다. 결국 그와 같은 意識이 豐富한 漁民일 수록 漁村指導公務員의 접촉을 好意的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파악된 것이다. 漁民의 수산기술에 대한 변화의식은 〈表 V·6〉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調查對象者の 48.6%가 매우 크다고 응답하고 있다. 여기서 技術水準의 변화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 어민」까지 합치면 어민의 90.3%가 수산기술 수준의 변화를 의식하고 있다. 이와같이 높은 技術變化意識을 漁民들이 갖게된 데는 漁村의 水產技術變化速度를 加速化시킨 漁村指導公務員들의 指導活動이 하나의 動機가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漁民들의 技術認識에 대해 一般漁民과 漁民後繼者間에 별다른 差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水產技術의 變化, 새로운 養殖方法 또는 새로운 어로기법의 등장과 보급에 대해 一般漁民과 漁民後繼者의 관심은 一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今後에 있어서 수산진흥기관은 水產技術開發 誘發者로서의 機能과 革新的 水產技術 情報專門家(technical-gate keeper)로서의 어촌지도사업을 동시에 強化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²⁶⁾

〈表 V·6〉 水產技術水準에 대한 變化意識 (單位: 度數, %)

| 조사대상자 \ 변화정도 | 매 우 크 다 | 조 금 변 화 | 변 화 없 다 | D.K. | 계 |
|--------------|-----------|-----------|----------|---------|------------|
| 1. 일 반 어 민 | 85(48.6) | 73(41.7) | 13 (7.4) | 4 (2.3) | 175(100.0) |
| 2. 어 민 후 계 자 | 85(48.6) | 75(42.9) | 14 (8.0) | 1 (0.6) | 175(100.0) |
| 계 | 170(48.6) | 148(42.3) | 27 (7.7) | 5 (1.4) | 350(100.0) |

$\chi^2 = 1.864$. d.f. = 3, ()내의 숫자는 변화정도에 대한 百分比 임.

5) 指導員의 指導內容에 대한 信賴度

〈表 V·7〉에 의하여 漁村指導公務員의 指導內容에 대한 信賴度를 보면 一般漁民의 경우는 調查者の 13.1%가 전적으로 信賴한다고 應答하고 있으며, 64.0%는 어느정도 신뢰한다고 應答하고 있고, 漁民後繼者는 전적인 신뢰가 24.0%, 어느정도 신뢰한다가 64.0%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信賴度의 程度가 階層別 漁業類型에 따라 差異가 있는지에 대해 有意水準 0.05로 χ^2 檢定을 한 결과 有意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지도원에 대한 기술적 信賴度의 크기와 漁民들의 階層別 漁業類型과의 사이에는 差異가 없다고 해석된다.

26) 崔正鉉, 전개서, p.31 참조.

수 산 경 영 론 집

<表 V·7> 指導內容에 대한 信賴度 (單位: 度數, %)

| 계 총 | | 신뢰도 어업유형 | 指導內容에 대한 信賴度 | | | | | 계 |
|------------|---------|-------------|--------------|-------------|-------------|-------------|------------|---|
| 여 민 | 어 선 어 업 | | 전적으로 신 뢰 | 어느정도 신 뢰 | 신뢰하기 곤 란 | 신뢰하지 않 음 | 모르겠다 | |
| 여 민 | 양식 어업 | 11(12.8) | 60(69.8) | 4(4.7) | 4(8.1) | 7(24.6) | 86(100.0) | |
| | 어선 어업 | 11(15.9) | 37(53.6) | 5(7.2) | 5(7.2) | 11(15.9) | 69(100.0) | |
| | 복합 어업 | 1(5.0) | 15(75.0) | 2(10.0) | 0(0.0) | 2(10.0) | 20(100.0) | |
| | 소 계 | 23(13.1) | 112(64.0) | 11(6.3) | 9(5.1) | 20(11.4) | 175(100.0) | |
| 여 민 후계자 | 양식 어업 | 16(26.7) | 36(60.0) | 2(3.3) | 3(5.0) | 3(5.0) | 60(100.0) | |
| | 어선 어업 | 25(24.8) | 64(63.4) | 4(4.0) | (2.0) | 6(5.9) | 101(100.0) | |
| | 복합 어업 | 1(7.1) | 12(85.7) | 1(7.1) | 0(0.0) | 0(0.0) | 14(100.0) | |
| | 소 계 | 42(24.0) | 112(64.0) | 7(4.0) | 5(2.9) | 9(5.1) | 175(100.0) | |
| 계 | | 65(18.6) | 224(64.0) | 18(5.1) | 14(4.0) | 29(8.3) | 350(100.0) | |

$\chi^2 = 26,474$, d.f. = 20.

2. 指導活動에 대한 二次元 分析

여기서는 指導受惠集團인 일반漁民과 漁民後繼者중에서 각 175명 씩 350名을 임의로 抽出하여 調查한 設問紙 조사결과 가운데서 問項間의 關聯性이 있는 조사항목만을 再選別하여 2次元分析을 통해 어촌지도사업 활동의 중요업적을 재평가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1) 漁業技術의 隘路經驗水準과 技術普及의 寄與度

<表 V·8>은 漁民이 경험한 漁業技術上의 隘路經驗水準의 程度와 漁村指導公務員의 技術普及의 寄與度를 一般漁民 및 漁民後繼者에게 물어서 작성한 것이다.

이 <表 V·8>에 의해 먼저 漁民 및 漁民後繼者들이 겪는 技術上의 隘路程度가 漁村指導公務員의 技術普及의 寄與度에 따라 差異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만약에 差異가 있다면 두 要因 사이에 어떠한 關聯性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두 要因 사이의 獨立性有無를 χ^2 檢證에 의해 검증한 결과 두 요인 사이의 獨立性은 有意水準을 $\alpha=0.01$ 로 할 때 $\chi^2(16, 0.01)=32.0<41,021$ 이 되

<表 V·8> 技術上 隘路經驗程度와 技術普及度 (單位: 名, %)

| 기술상의 애로 | | 기술보급의 기여도 | 매우 많다 | 많 다 | 가끔 있다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합 계 |
|-----------|---------|-----------|-----------|-----------|----------|--------|------------|-----|
| 매 우 크 다 | 크 다 | | 18(41.9) | 12(27.9) | 10(23.3) | 3(7.0) | 0(0.0) | |
| 매 우 크 다 | 크 다 | 14(10.1) | 61(43.9) | 52(37.4) | 12(8.6) | 0(0.0) | 139(100.0) | |
| 그 저 그 렇 다 | 별로 없 다 | 10(20.8) | 10(20.8) | 20(41.7) | 6(12.5) | 2(4.2) | 48(100.0) | |
| 별로 없 다 | 전 혀 없 다 | 20(30.3) | 23(34.8) | 19(28.8) | 3(4.5) | 1(1.5) | 66(100.0) | |
| 전 혀 없 다 | 합 계 | 14(27.5) | 13(25.5) | 16(31.4) | 6(11.8) | 2(3.9) | 51(100.0) | |
| | | 76(21.9) | 119(34.3) | 117(33.7) | 30(8.6) | 5(1.4) | 347(100.0) | |

$\chi^2(16, 0.01)=32.0 \leq 41.021$.

漁村指導事業의 評價

므로 歸無假說²⁷⁾이 기각된다. 즉 兩者간에는 有意性이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水產技術에 대한 隘路를 많이 경험할수록 지도원에 대한 기술의 존도가 높고, 결과적으로 普及의 寄與度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으로서 技術上의 隘路程度와 技術普及의 기여도 사이에는 깊은 關係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關係는 특히 技術上의 隘路가 많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고 應答한 應答者에서 技術普及의 寄與度에 큰 差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水產技術의 革新을 실감하는 漁民일수록 漁村指導公務員의 必要性과 積極的인 活動을 더 크게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2) 漁業技術의 隘路經驗水準과 指導公務員의 必要性

漁民이 느끼는 水產技術上의 隘路水準의 차이에 따른 指導活動의 必要性 與否를 檢討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表 V·9>이다. 여기에서 技術上의 隘路가 전혀 없다고 應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技術上 隘路水準의 差異에 관계없이 漁村指導公務員들의 指導活動을 必要로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것은 總應答者 345名 가운데서 83.2%에 해당하는 287名이 指導活動의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는데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漁業技術의 隘路經驗水準과 指導活動의 必要度와의 獨立性有無를 有意水準 $\alpha=0.01$ 로 檢定하면 $\chi^2(12, 0.01)=26.2<43.118$ 로서 高度로 有意함을 알 수 있다. 즉 技術上의 隘路程度에 따라 指導活動의 必要性을 요청하는 程度에는 差異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表 V·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漁業技術上의 隘路를 많이 經驗할수록 指導活動의 必要性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이다. 따라서 漁業技術上의 隘路程度와 指導活動의 必要性間에는 關聯性이 깊다고 말할 수 있다.

<表 V·9> 漁業技術上의 隘路와 指導活動의 必要性 (單位: 名, %)

| 어업기술상의 애로 지도활동의 필요성 | | 매우 많다 | 많다 | 다 | 가끔 있다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합계 |
|------------------------|---|----------|-----------|-----------|----------|---------|------------|----|
| 많 | 다 | 42(35.0) | 36(30.0) | 35(29.2) | 6 (5.0) | 1 (0.8) | 120(100.0) | |
| 가끔 있다 | 다 | 26(15.6) | 62(37.1) | 64(38.3) | 13 (7.8) | 2 (1.2) | 167(100.0) | |
| 별로 없다 | 다 | 5(11.6) | 15(34.9) | 15(34.9) | 8(18.6) | 0 (0.0) | 43(100.0) | |
| 전혀 없다 | 다 | 3(20.0) | 4(26.7) | 3(20.0) | 3(20.0) | 2(13.4) | 15(100.0) | |
| 합계 | | 76(22.0) | 117(33.9) | 117(33.9) | 30 (8.7) | 5 (1.4) | 345(100.0) | |

$$\chi^2(12, 0.01)=26.2 \leq 43.118.$$

3) 漁業技術의 隘路經驗水準과 漁村指導所의 必要性

漁民이 경험하는 漁業技術上의 隘路程度에 따라서 漁民들은 漁村指導所의 必要性을 서로 다르게 느끼는가 하는 문제이다. <表 V·10>에 따르면 총 應答者 349명中 92%가 漁村指導所의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특히 技術上의 隘路를 더 많이 경험이 있는 漁民일수록 漁村指導所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統計的으로 立證하기 위해 技術上의 隘路程度와 漁村指導所의 必要性에 대한 獨立性有無를 有意水準 $\alpha=0.01$ 로 檢證하면 $\chi^2(12, 0.01)=21.0 \leq 25.4$ 로서棄却이 된다.

27) 여기서 歸無假說은 두 가지 分類基準 즉 漁業技術上의 隘路와 技術普及의 寄與度가 서로 獨立的(無關係) 이다라는 뜻을 의미한다.

수 산 경 영 론 집

〈表 V·10〉

漁業技術上의 隘路와 漁村指導所의 必要性

(單位:名, %)

| 어업기술상의 애로 어촌지도소의 필요성 | 매우 많다 | 많다 | 가끔 있다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합계 |
|-------------------------|----------|-----------|-----------|---------|--------|------------|
| | 44(27.3) | 62(38.5) | 44(27.3) | 11(6.8) | 0(0.0) | |
| 꼭 필요하다 | 44(27.3) | 62(38.5) | 44(27.3) | 11(6.8) | 0(0.0) | 161(100.0) |
| 도움이 된다 | 29(18.1) | 50(31.3) | 65(40.6) | 13(8.1) | 3(1.9) | 160(100.0) |
| 없어도 된다 | 3(21.4) | 4(28.6) | 3(21.4) | 3(21.4) | 1(7.1) | 14(100.0) |
| 전혀 필요없다 | 3(21.4) | 3(21.4) | 4(28.6) | 3(21.4) | 1(7.1) | 14(100.0) |
| 합계 | 79(22.6) | 119(34.1) | 116(33.3) | 30(8.6) | 5(1.4) | 349(100.0) |

$$\chi^2(12, 0.01) = 21.0 \leq 25.4.$$

따라서 統計學的으로 보아서도 技術上의 隘路정도의 크기와 漁村指導所의 必要性 간에는 관계가 깊으며, 兩者사이의 이 관계는 技術隘路 경험이 많을 수록 漁村指導所의 必要性에 대한 認識水準도 더 높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4) 指導公務員의 技術普及度와 指導內容에 대한 信賴度

一般漁民과 漁民後繼者가 느끼고 있는 漁村指導公務員의 技術普及寄與度와 그들의 指導內容에 대한 信賴度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表 V·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漁村指導公務員의 指導內容전반에 대하여 應答者の 18.7%는 전적으로 信賴하고 있다고 應答하였으며, 63.8%는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고, 나머지 17.5%는 信賴하기가 곤란하거나 信賴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小數이지만 技術普及의 寄與度가 크다고 應答한 漁民들의 대부분은 指導에 대한 信賴度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반대로 技術普及의 寄與度를 크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漁民들은 指導內容에 대해서도 크게 信賴感을 갖지 않고 있다. 대체로 多數의 漁民들은 寄與度의 低評價와 함께 신뢰도도 낮게 評價하고 있다.

〈表 V·11〉

漁業技術普及度와 指導內容의 信賴度의 關係

(單位:名, %)

| 어업기술 보급도 지도내용의 신뢰도 | 매우 크다 | 크다 | 그쳐 그렇다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합계 |
|-----------------------|----------|-----------|----------|----------|----------|------------|
| | 19(29.2) | 38(58.5) | 2(3.1) | 4(6.1) | 2(3.1) | |
| 전적으로 신뢰 | 19(29.2) | 38(58.5) | 2(3.1) | 4(6.1) | 2(3.1) | 65(100.0) |
| 어느 정도 신뢰 | 23(10.4) | 95(42.8) | 34(15.3) | 48(21.6) | 22(9.9) | 222(100.0) |
| 신뢰하기 곤란 | 0(0.0) | 3(16.7) | 5(27.8) | 5(27.8) | 5(27.8) | 18(100.0) |
| 거의 신뢰하지 않음 | 0(0.0) | 2(14.3) | 0(0.0) | 4(28.6) | 8(57.1) | 14(100.0) |
| 전혀 신뢰하지 않음 | 1(3.4) | 2(6.9) | 7(24.1) | 5(17.2) | 14(48.3) | 29(100.0) |
| 합계 | 43(12.4) | 140(40.2) | 48(13.8) | 66(19.0) | 51(14.7) | 348(100.0) |

$$\chi^2(16, 0.01) = 32.0 \leq 111.598.$$

이를 統計的으로 立證하기 위해 獨立性有無를 有意水準 $\alpha=0.01$ 로 檢證해 보면 $\chi^2(16, 0.01) = 32.0 \leq 111.598$ 로서 技術普及의 寄與度와 指導內容의 信賴度間에는 큰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漁村指導公務員으로 부터 營漁技術에 관한 지도를 많이 받고 있는 漁民은 漁村指導公務員의 指導內容에 대한 信賴感이 높은 반면에, 營漁技術에 대한 지도를 받은 경험이 없거나 낮은 어민들은

漁村指導事業의 評價

대체적으로 漁村指導公務員의 指導內容에 대해서도 낮은 信賴度를 나타내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5) 指導公務員의 技術普及度와 漁民所得

漁村指導公務員의 技術普及活動이 漁民의 所得增大에 어느정도 寄與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야 말로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이다. 여기에 대해 漁民들은 應答者 全體의 52.6%가 所得增大에 대한 寄與度가 매우 크다고 하였고, 43.2%는 어느정도 寄與한다고 하여 기술보급이 소득증대에 미친 효과를肯定的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95.8%로 나타났다.

반대로 技術普及의 程度가 크지 않다고 應答한 漁民들은 技術普及의 所得增大효과에 대해서도 역시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漁村指導公務員의 技術普及의 寄與度가 전혀 없다고 應答한 51名의 漁民 中에서 58.8%(30名)는 所得增大效果를 인정할 수 없다고 應答하였다.

따라서 技術普及의 寄與度와 所得増大의 寄與度間의 獨立性有無를 有意水準 $\alpha=0.01$ 로 檢定하면 $\chi^2(16, 0.01)=32.0 \leq 153.14$ 로서 高度의 有意性이 인정된다. 즉 漁村指導公務員의 技術普及度와 그에 의한 所得增大효과 間에는 높은 關聯性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漁村所得增大를 꾀하기 위해서는 漁村指導公務員들의 活動이 필요하며, 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 할 수 있다.

〈表 V·12〉 技術普及度와 漁民所得增大의 寄與度間의 關係 (單位: 名, %)

| 기술보급도 소득증대의 기여도 | 매우 크다 | 크다 | 다 | 그저 그렇다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합계 |
|--------------------|----------|-----------|----------|----------|----------|------------|----|
| 전적으로 인정 | 28(29.5) | 55(57.9) | 2 (2.1) | 8 (8.4) | 2 (2.1) | 95(100.0) | |
| 어느 정도 인정 | 10 (7.3) | 69(50.4) | 20(14.6) | 28(20.4) | 10 (7.3) | 137(100.0) | |
| 인정하기 곤란함 | 1 (2.5) | 8(20.0) | 14(35.0) | 8(20.0) | 9(22.5) | 40(100.0) | |
| 거의 인정하지 않음 | 3 (4.5) | 7(10.6) | 8(12.1) | 20(30.3) | 28(42.4) | 66(100.0) | |
| 전혀 인정하지 않음 | 1(10.0) | 1(10.0) | 4(40.0) | 2(20.0) | 2(20.0) | 10(100.0) | |
| 합계 | 43(12.4) | 140(40.2) | 48(13.8) | 66(19.0) | 51(14.7) | 348(100.0) | |

$$\chi^2(16, 0.01)=32.0 \leq 153.14$$

6) 指導公務員의 技術普及度와 漁民들의 漁業技術變化意識

漁村指導公務員의 技術普及이 漁村의 漁業技術이나 養殖方法 또는 漁村技術水準의 變化를 어느정도 가져왔으며, 여기에 대해 漁民들은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技術變化意識과의 사이에 과연 어떤 法則性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자.

〈表 V·13〉은 이러한 관계를 보기 위해 集計된 것이다. 여기서 보면 技術普及의 寄與程度에 관계없이 應答者の 90.8%가 漁村에 있어서의 漁業技術水準의 變化를 意識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것을 技術普及度수준에 따라 分析해 보면 技術普及의 寄與度가 매우 크다고 應答한 者 가운데서 漁村의 技術水準이 크게 變化했다고 보는 쪽은 76.7%이며, 조금 變化했다고 보는 것은 23.3%로서 대부분이 技術普及度가 높을수록 漁民들이 漁業技術變化의식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技術普及度가 「크다」고 應答한 者는 전체응답자의 40.2%이며, 이들中 技術水準이 크게 變化

수 산 경 영 론 집

〈表 V·13〉

技術普及度와 漁村의 技術水準의 變化

(單位: 名, %)

| 기술보급도 | | 매우 크다 | 크다 | 그저 그렇다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 합계 |
|----------|--|----------|-----------|----------|----------|----------|------------|
| 기술수준의 변화 | | | | | | | |
| 크게 변화 | | 33(19.5) | 78(46.2) | 15(8.9) | 27(16.0) | 16(9.5) | 169(100.0) |
| 조금 변화 | | 10(6.8) | 54(36.7) | 26(17.7) | 30(20.4) | 27(18.4) | 147(100.0) |
| 별로 변화없다 | | 0(0.0) | 7(25.9) | 7(25.9) | 8(29.6) | 5(18.5) | 27(100.0) |
| 전혀 변화없다 | | 0(0.0) | 1(20.1) | 0(0.0) | 1(20.0) | 3(60.0) | 5(100.0) |
| 합계 | | 43(12.4) | 140(40.2) | 48(13.8) | 66(19.0) | 51(14.7) | 348(100.0) |

$$\chi^2(12, 0.01) = 26.2 \leq 40.96$$

했다에는 55.7%, 조금 變化했다에는 43.5%로 응답함으로써 총 95.9%의 응답자가 技術水準의 變化를 크게 認識하고 있다. 한편 漁村指導公務員의 技術普及의 寄與度가 전혀 없다고 應答한 者는 小數이지만 이들中 31.4%는 漁村技術水準이 크게 變化했다고 보고 있으며, 52.9%는 조금 변했다고 응답하였고, 별로 變化없다고 본 것은 9.8%, 그리고 모르겠다고 한 것은 5.9%로 나타났다.

以上으로 보아서 대부분의 漁民들은 漁村의 技術水準에 變化가 많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어촌지도 공무원의 技術普及度를 높게 評價하는 어민들 일수록 漁村에 있어서의 技術水準變化 정도를 더 실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技術普及의 寄與度와 技術水準變化間의 獨立性有無를 有意水準 $\alpha=0.01$ 로 檢定하면 $\chi^2(12, 0.01) = 26.2 < 40.96$ 으로서 兩者사이에는 高度의 有意한 關係가 있음을 증명한다. 즉 漁村指導公務員의 技術普及의 寄與度와 漁村技術水準의 變化意識間에는 關聯性이 깊은 것이다. 곧 「어촌지도공무원의 역할증대→어촌 기술 수준의 향상→어민들에 대한 기술적 충격→어민 소득의 증대」라는 일연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말할 수 있다.

7) 指導內容에 대한 信賴度와 漁民所得增大

漁村指導公務員의 指導內容에 대한 信賴度와 漁家所得 增大效果와의 關係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表 V·14〉이다.

〈表 V·14〉

指導內容의 信賴度와 所得水準과의 關係

(單位: 名, %)

| 지도내용의 신뢰도 | | 절적으로 신뢰 | 어느정도 신뢰 | 신뢰하기 힘든 | 거의 신뢰하지 않음 | 전혀 신뢰하지 않음 | 합계 |
|-----------|--|----------|-----------|---------|------------|------------|------------|
| 소득증대의 기여도 | | | | | | | |
| 매우 커다 | | 37(38.9) | 52(54.7) | 3(3.2) | 0(0.0) | 3(3.2) | 95(100.0) |
| 어느정도 기여했다 | | 21(15.2) | 102(73.9) | 5(3.6) | 5(3.6) | 5(3.6) | 138(100.0) |
| 그저 그렇다 | | 0(0.0) | 25(61.0) | 5(12.2) | 2(4.9) | 9(22.0) | 41(100.0) |
| 별로 없다 | | 7(10.6) | 39(59.1) | 5(7.6) | 7(10.6) | 8(12.1) | 66(100.0) |
| 전혀 없다 | | 0(0.0) | 6(60.0) | 0(0.0) | 0(0.0) | 4(40.0) | 10(100.0) |
| 합계 | | 65(18.6) | 224(64.0) | 18(5.1) | 14(4.0) | 29(8.31) | 350(100.0) |

$$\chi^2(16, 0.01) = 32.0 \leq 84.83.$$

漁村指導事業의 評價

여기서 보면 기술보급활동이 漁家所得增大에 미친 효과가 크다고 말한 어민일 수록 漁村指導公務員의 指導內容에 대한 信賴度도 높게 評價하고 있는 반면에, 漁村指導公務員의 指導內容에 대한 信賴度가 낮은 어민일 수록 지도활동이 漁家所得 增大에 미친 效果에 대해서도 별로 認定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漁村指導公務員의 指導內容의 信賴度와 漁民의 漁家所得增大와의 사이에 어떠한 關係가 存在하는가의 與否를 알아 보기 위하여 獨立性有無를 有意水準 $\alpha = 0.01\%$ 로 檢定한 결과 $\chi^2(16, 0.01) = 32.0 \leq 84.83$ 로 나타났다. 곧 兩者사이에는 高度의 有意性이 存在하는 것이다.

즉 漁村指導公務員의 指導內容에 대한 信賴程度와 漁家所得增大의 寄與程度間에는 關聯性이 깊다고 하는 것이 統計的으로 立證된 것이다. 이는 어촌지도공무원의 지도활동에 대한 신뢰가 높은 어민일 수록 신기술에 대한 채용율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그것은 어가소득증대와 연관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높은 「높은 信賴度—新技術採擇率 擴大—漁業生產性 向上—漁家所得增大」라는 인과관계가 成立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指導員들은 漁民들의 技術的 衝擊者(technical impactor)인 것이며, 資質이 우수한 指導公務員일 수록 어민들에 대한 기술적 信賴感을 증진시켜 이를 사업이나 소득증대 活動으로 대응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VII. 結論

이상에서 주로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設問調查資料에 의거하여 漁村指導事業의 現況을 分析하고, 그 内容과 結果 및 効果 등을 評價해 보았다.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現在의 漁村指導所는 入力, 豫算 및 裝備의 面에서 심한 脆弱性을 느끼고 있다. 특히 專門的인 技術指導를 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指導裝備는 물론, 機動裝備와 弘報裝備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不足한 실정인 것이다. 한편 漁村指導事業費는 農村指導事業費와 비교할 때 豫算規模面에서 보면 指導對象 家口當豫算規模가 農村指導事業費의 12%에 불과하다. 그리고 指導員 1人當豫算規模는 農村指導員의 27.1%의 水準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漁村의 指導事業을 보다活性化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農村指導事業費와 대등한 水準의 指導事業費가 확보되어야만 하겠다.

둘째, 現行 漁村指導活動의 方法은 漁村指導所를 中心으로 하는 個人接觸指導에 主로 依存하고 있다. 이와같은 個人接觸指導로 인하여 指導人力의 부족현상을 더招來하게 되고, 따라서 先進漁家나 中堅漁民指導에 主로置重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今後의 漁村指導活動은 現行의 個人接觸指導에서 漁村에 適合한 學習組織을 開發育成시켜 이를 効率的으로 利用하여, 弘報裝備나 展示漁場 등을 적극적으로 活用하는 등 指導方法의 轉換내지 檢討가 必要하다.

세째, 漁村指導公務員의 指導內容은 多數品目, 多樣한 技術內容으로 구성되며, 經營問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어촌지도공무원의 主된 指導內容은 「적지선정—시설지도—채묘지도—양성지도—재취지도」의 5個 過程이라는 點과, 그 중에서도 「채묘—양성」의 2個 지도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째, 漁村指導公務員이 指導活動을 위해서 關聯機關의 擔當者를 對面하는 接觸頻度는 漁民後繼

수 산 경 영 론 집

者, 漁村契長, 地區別 水協의 順으로 그 回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水產研究所와 市·郡水產課와의 접촉빈도는 의외로 낮았다.

다섯째, 어촌지도사업의 遂行을 위한 10個의 與件分析 結果에 의하면 漁村指導公務員은 관내 水產業에 대한 知識, 指導公務員으로서의 職能的 資質 및 热性 등은 비교적 높은 水準으로 評價되었으나, 漁村指導公務員의 裝備, 旅費, 人員數, 漁村指導를 위한 示範漁場, 有關機關과의 協助 및 支援關係 등은 매우 不充分하거나, 普通 以下의 水準이다.

여섯째, 漁村指導公務員의 指導活動이 漁民의 所得增大에 미치는 영향은 그 寄與度가 큰 것으로 認定되어, 兩者사이에는 높은 有意性이 存在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실제로 漁業에 從事하고 있는 漁民集團과 漁業에 從事하고 있지 않는 集團(지방수산공무원, 수산청공무원, 지방수협 임직원 등)으로 區分하여 보면 前者보다는 後者が 漁村指導活動에 의한 所得增大의 寄與度를 높이 評價하고 있었다. 한편 漁村指導公務員에 의한 水產技術의 普及度에 대하여 一般漁民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보다 漁民後繼者들의 評價水準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를 漁業類型別로 보면 養殖漁業, 複合漁業, 漁船漁業의 順으로 그 寄與度를 評價하고 있다. 이와같은 評價에 의하면 現行의 漁村指導는 漁業에 대한 職業意識이 強한 漁民들로부터 더 好意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主로 養殖漁業을 中心으로 그것이 이루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일곱째, 漁民들이 經驗하는 漁業技術上의 애로와 指導活動 및 指導所의 必要性間의 관계에 대한 統計的 檢定 결과에 따르면 兩者사이에는 高度의 有意性이 확인되었다. 즉 漁業技術上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록 指導活動 및 指導所의 必要性을 더 절실이 要求하고 있는 점이다.

여덟째, 오늘날 水產分野에서 일어나고 있는 技術的 變化와 여러가지 變動에 대하여 漁民들은 90.8%가 이를 認識하고 있다는 것과, 그 중에서도 漁村指導公務員의 水產技術普及活動을 肯正의 으로 評價하는 漁民일 수록 그와같은 技術 및 社會·經濟에 대한 變化意識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 점이다. 그리하여 漁村指導事業과 漁民들의 技術變化意識水準과의 사이에는 높은 統計的 有意性이 存在하는 것으로 立證되었다.

따라서 現在 國家的 次元에서 展開해 나가고 있는 漁村指導事業에 대해 아직도 우리들의 意識속에서는 이를 不必要한 行政的 努力으로 評價하고 있는 점이 不少하다고 볼 수 있으나 本研究의 結果 비로소 이 事業의 必要性 有無, 強化의 與否에 대한 解答이 어느정도 分明해 졌다고 본다.

즉 오늘날 漁民들은 水產業의 經營과 漁村生活의 過程에서 水產技術을 비롯한 여러가지 새로운 知識에 대해 많은 關心과 興味를 느끼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經驗이 많은 漁民일 수록 여러 方面을 통해 그와같은 技術的 相談對象을 찾고 있다. 漁村指導公務員은 바로 이점에서 漁村의 水產技術諮詢專門家로서, 한편으로는 漁民社會의 變化促進者로서 役割의 存在라 말할 수 있다. 漁民들의 水產技術依存度가 다른 어느 集團에 있어서보다 이들 指導公務員들에게 가장 높았다는 調査結果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漁村指導事業이 水產個別經營의 近代化와 漁村地域社會發展의 均衡化를 도모함에 있어서 必要하고, 또한 重要한 活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強調할 必要가 없다고 본다. 남은 과제는 이와같은 漁村指導事業을 여하히 活性화 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本研究의 結果

漁村指導事業의 評價

에서 밝힌 첫째 必要한 指導人力,豫算 및 裝備의 補強, 둘째 指導機能의 專門化와 方法의 改善, 셋째 市·郡, 水產研究所 및 水協 등 指導有關機關과의 協力增進, 넷째 有用한 學習組織의 開發과 그 育成, 다섯째 漁村指導公務員의 士氣昂揚 등에 대한 指導政策의 強化가 요청된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一連의 活性化 措置에 앞서 우리들에게 必要한 것은 漁村指導業에 대한 確固한 政策的 信念이다.

끝으로 本 研究에 共同參與한 釜山水產大學 水產經營學科 孔龍植, 李康雨 두 教授에 感謝한다.

참 고 문 헌

1. 國立水產振興院 訓令, 漁村指導公務員活動指針(84. 4. 28 제정, 훈령 제143호) (85. 7. 8 개정)
2. 國立水產振興院, 漁村指導活動狀況報告, 1985. 12.
3. 國立水產振興院, 1985年度 漁村指導事業報告書, 1986, p. 69.
4. 國立水產振興院, 漁村指導活動實積報告書, 1980~1986.
5. 國立水產振興院, 研究報告, 第24號, 1980.
6. 金利泰, 近代農村指導論, 先進文化社, 1973.
7. 權元達, 農村指導論, 先進文化社, 1979.
8. 崔敏浩 4人共著, 新制 農村指導論, 經文社, 1982.
9. 農村振興廳, 農村指導事業報告書, 1986.
10. 朴泰植外, 新制 農村指導論, 經文社, 1982.
11. 鞍田純, 農業指導の理解と行動, 農山 漁村 文化協會, 1975.
12. 鄭址雄·徐圭善, 農村地域社會開發事業의 效果와 發展方案,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13. 李漢相, 一線農村指導所事業의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全南大 大學院, 1985.
14. 崔正鉉, 淺海養殖漁業發展過程에 관한 研究, 수산경영논집, Vol. 14, No. 2, 1985.
15. M. Ben-Yami, A. M. Anderson, Community fishery centres : Guidelines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FAO, Fisheries technical paper #264, 1985.
16. D. J. Beadfield, Guide to Extension, FAO, 1985.

An Evaluation on the Operating of Fisheries Extension Services

Jeong-Yoon Choi

Summary

1. The Purpose of Study

This is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operating of Fisheries Extension Services of Korea, for performing the activities such as guiding fisheries technique as well as offering industrial information to the fishermen in fishing village. By doing so, the Fisheries Extension Services(FES) can materialize the continued growth of fisheries,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 and the increase in income by enhancing the knowledge level of Fishermen, etc.

In performing fisheries policy, this activity plays a great role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y, and it has become practical since 1976 in Korea. In order to meet immediately with the problem of fisheries technical innovation and rapid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the fisheries, the fishermen should not only enhance their scientific and comprehensive capacity in fisheries technique but obtain various effective information.

Generally, as most of all the fishermen are poor in the managerial structure and scattered in fishing villages, they have little opportunity in the contact of information. As a result, it is necessary for the FES to perform the fishing business by the extension service officials who has received special training and acquired fisheries know-how in these fields. And yet, FES is under the unfulfilled circumstance in such factors as manpower, technical know-how, equipment, and the service system etc., which is required in promoting the social, economic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 and in resolving the high technique demand of fisherman.

This study on the fisheries extension services have been studied from those backgrounds.

2. Research Method

The data of collecting methods which were necessary in carrying out this study was adopted by the questionnaire research on the present extension service activity, through the subject of the extension services (driving agency of the work and the officials), the object

漁村指導事業의 評價

(fishermen) and the 3rd observers to the extension services (the authorities concerned). The research sample was taken by the sampling extraction of total 1,774 men from the above 3 groups. And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from August, 1986 to October, 1986, supported from the Fisheries Extension Office (FEO) located in field during the research process.

In this study, the levels of the extension operating were determined and estimated in accordance with the extension service method, morale of extension service officials and the extension service system, etc. through the collected data of the research questionnaire paper. And based on this result, the essential conditions of the extension services were grasped, and also we tried to present the various activity plan necessary to promote the operating of the extension services. The questionnaire research data was calculated by the computer center of National Fisheries University of Pusan, and the total result was again tried on the one demension analysis along with two dimension analysis to search out the relativity between the questionnaire, and the statistical test was done χ^2 test in significance level of 1~5%.

3. Contents of Study

This study consists of 7 chapters and the contents are as follows :

Chapter I : The object and method of the study

- 〃 Ⅱ : The assessment and analysis of the extension services
- 〃 Ⅲ : The contents and method of the extension services
- 〃 Ⅳ : Analysis of the essential conditions for the extension services
- 〃 Ⅴ : The evaluation of activities of extension services
- 〃 Ⅵ : Conclusion

4. Results and Recommendation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estimated by logical process and analysis are as follows :

- 1) Most of Korean fishing villages and coastal fishermen have shown much concerns about fisheries technique and social changes, thus many of them were confronted with new problems on how to adapt and to meet changes.
- 2) Majority of fishermen estimated FEO as an organization of specific technologies with all the thing concerning the fisheries technique in general. Therefore the fishermen wanted to utilize the FEO as an adaptable method for the modern fisheries techniques as well as the environmental changes.
- 3) In contrast with the fast changes of the fisheries technique, the complexity and

수 산 경 영 론 친

variety of technical system and the broadness of fishing village and fishermen, it was revealed that the necessary factors such as the facilities, manpower, budget, and the level of applying techniques of the FEO located in field were highly insufficient. Accordingly, the guiding efficiency was low and the extension services did not provide full solution to the various request from fishermen.

- 4) It is possible to classify the activation factor for the extension service into two large dimensions ; personal dimension relevant to guidance officials and work dimension relevant to the organization. And it was found that the activation level of the work dimension was far lower than the personal dimension between them. So, the activation should be done first in the dimesion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the extension services.
- 5) The extension services officials are now demoralized in general, thus it is necessary to take reality into consideration : the expense of activity, the adequate endowment of activity scope and the reasonable operation of the position class, etc to enhance its morale.

However, in order to do the FES activation, first of all, the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which is lain unsettled stage until now. And there must be change in the understanding of government i.e. the fisheries extension services are the essential policy subject to build up the base of fisheries growth and modernize the fisheries management. And it should be driven positively with the recognition of the "lasting project".